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 결의문의 뒷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사목적을 위하여 오끼나와를 분리하고 있는 부당한 현실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회구하는 일본국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 것을 사토오 총리는 자각하고, 그 시정이야말로 국정상 최우선의 문제로 처리하여야 최고의 책임이다는 확신 하에 국민여론에 답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선에 서서 국제화의 길을 열고, 국가의 명예와 총리대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오끼나와의 시정권 반환을 실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1972년 맺어진 오끼나와 반환협정은 과연 이 결의를 받아 맺어진 것일까요.

4. 소녀 폭행사건에서 비롯된 민중운동의 전개

- 가. 사건과 그 전개
- 1995. 4. 오끼나와 본섬에서 3명의 미군이 초등학교 소녀를 폭행—계획적 범행, 미군은 렌트카를 빌려 물건을 사고 돌아오는 소녀를 납치
- 9. 8. 사건이 보도되다. 오끼나와 경찰, 미군 당국에 범인의 신병인도를 요구
- 9. 11. 오끼나와 지사, 기자회견에서 지위협정의 수정을 표명
- 9. 12. 오끼나와현, 미군에 항의
- 9. 13. 현, 도쿄에 가 일본정부에 지위협정 수정을 요청
- 9. 14. 사건 보도 후 7일째인 이날까지 40단체 항의 행동
- 9. 21. 사건보도 후 14일째인 이날까지 75단체 항의행동
- 10. 3. 신문 현내 53자치단체 모두 항의 결의 했다고 보도

- 10. 14. 미군기지가 있는 14개 광역자치단체장 협의회 지위협정의 수정을 결의
- 10. 21. 미군에 의한 소녀폭행사건을 규탄하고 일미지위협정 수정을 요구하는 현민총궐기대회 개최, 85,000명 참가, 대회에서 지위협정 수정, 기지 정리축소 등 44개 항 결의
- 11. 4. 현, 지위협정 중 10항목 수정 요청

지위협정 수정을 포함한 오끼나와기지 관련 결의를 한 일본 전국의 자체체 수는 1,079(총 3,303 중).

나. 현민 총궐기대회의 결의 내용

사건은 반인간적이다. 미군점령 아래의 군사적 식민지 의식의 발현이다. 피의자 개인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미군의 문제이다. 식민지적 차별규정을 포함한 지위협정과 그의 악용이다. 일본정부의 대미종속 50년, 기지 온존, 문제 방치정책의 50년이다. 일본정부에 미군범죄의 근절,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 일미지위협정의 빠른 개정, 기지의 정리와 축소를 요구한다.

다. 1996. 9. 8. 지위협정의 수정과 현재 미군기지의 정리와 축소를 묻는 현민투표가 현 조례와 명령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그 결과는 투표율 59. 53%, 유효투표 중 91. 26%가 수정을 요구하고, 미국기지의 정리와 축소가 옳다.

라. 전후사를 시기 구분하면 이 사건을 계기로 민중이 발휘한 역량은 한 시기를 긋는 것이다.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전후 최대의 민중운동으로 발전되었다. 오끼나와에서 미군범죄의 역사적 총평가의 계기가

되었다. 오끼나와 문제와 일본문제를 제기하였다. 오끼나와 기지문제가 전국적 문제가 되었다. 1,079 자치단체의 결의가 있었다. 일본 내 각 지역에서 기지 문제를 다루는 데 전국적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현 내에서 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을 초월한 교류의 계기가 되었다. 성별, 직업, 연령, 지역, 지위 등을 초월한 휴머니즘으로 맺어진 연대가 이루어졌다. 오끼나와 기지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계기가 되었다(예컨대 보스톤 심포지엄). 인권, 주권, 평화를 구조적으로 파악하게 되었다.

5. 결어

새로운 민중사의 창조—치안유지법에 항거하여, 옥쇄를 거부하여, 군사적 식민지 지배에 항거하여

오끼나와에서의 한국·조선인의 상황

강연 다까다 키요에(高田清恵: 류큐대학 강사)
번역 김선영

1. 전후 재일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가. 점령 하 일본에서의 법적 지위 :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시기

(1) GHQ(미국동사령부)의 재일외국인에 대한 처우의 이면성: '해방민족'인 동시에 '구 일본인'

* 1945년 11월 <일본점령 및 관리를 위한 연합국 최고사령관에 대한 일본 항복 후 초기의 기본지령>(미국 본토로부터 연합국 최고사령관에게)

대만계 중국인 및 조선인의 처우에 대한 원칙적인 방침

"귀관(貴官)은 대만계 중국인 및 조선인을 군사상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해방민족으로서 대우해야 마땅하다. 그들은 본 지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인'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그들은 또한 일본신민(日本臣民)이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적(敵)국민으로서 처우해도 좋다..."

① 조선인을 해방민족으로서 대우해준 것: 특히 점령초기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시정하기 위해 일련의 시책을 취하게 함

→ 그러나 이것은 연합국이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연합국 국민 또는 중립국 국민과 같은 지위,

처우를 인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많은 측면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 향유하고 있던 특권, 이익으로부터 제외되어, 지위 그 자체가 매우 불명확해졌다.

② 조선인을 '적국민=일본인'으로서 대우해준 것

* 1946년 11월 GHQ의 공식 발표
"고국으로의 귀환을 거부하는 조선인은 일본국적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 GHQ 섭외국지령(除外局指令)
'귀국하지 않은 조선인은 일본법률을 따른다'

(2) 점령 하 일본의 '재일 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한 대응

① '일본 국적 보유자'로서의 위치
"강화조약의 체결에 따라 그 영역 및 인민(人民)의 귀속이 결정된다."

강화 전의 국적 변경은 인정하지 않으며, 일본국적 소지자로 하여 일본법률을 따를 것을 강요

→ '외국인으로서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위로부터 배제함.

② 외국인 등록령
1947년 5월 <외국인 등록령>(칙령 207호로 공

포)

조선인은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 등록령을 강제로 적용했다.

: 외국인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재일조선인의 감시와 단속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 1951년 출입국관리령과 1952년 외국인등록법이 시행되기 전 5년간 재일조선인을 지배하고 억압하는 형벌법규였다.

③ 참정권의 정지

제안이유: 堀切善次郎 내무대신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에 따라 조선인과 대만인은 원칙적으로 일본의 국적을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나 강화조약의 체결까지는 아직 일본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즉각 선거권을 금지시키지는 않았으며 당분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했다."(『의회제도 70년사 자료편』, 대장성 인쇄국, 1960년)

④ 민족교육의 부정

1947년 4월부터 6, 3, 3제의 도입을 비롯한 신교육체계로 이행

1948년 문부성(文部省)은 문부성령에 의해 조선인도 일본학교에의 '취학의무' 부여

→ 일본국적을 소유하고 있던 것에 근거함

나. 강화조약 이후 : 일본국적의 상실

(1) 일본국적의 박탈

- 법무부 <민사국장지침>(1952년 4월 19일, 민사갑 498)

* 국적 처리에 관한 재판
- 송두회(宋斗會) 소송
- 조건치(趙健治) 소송

(2) 출입국관리와 재류권

이후 재일조선인은 출입국관리령·외국인등록법의 규제 하에 놓임.

- 재류자격의 결여와 복잡화

* 1952년 4월 29일 <포츠담선언의 수락에 따라 발행하는 명령에 관한 건에 기초한 외무성 관계명령조치에 관한 법률>(법률126호)

- 한국 조선의 분단 지배로: 한국과의 법적 지원 협정 체결

* 1965년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

한국국적만 '협정 영주권' 부여

(3) 외국인등록법에 따른 관리

- 지문날인의 의무화

- 등록증명서의 휴대의무

- 제시 의무

- 각종 제출 의무

- 위반할 때는 부당하게 무거운 벌칙

→ 재일한국 조선인의 기본적 인권, 민주주의적 민족 권리의 규제하는 무기로써 기능했다.

(4) 일본국적을 소유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제외

- 전쟁희생자 원호제법

- 사회보장

- 국적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에의 가입

- 공영 공단 공사주택 입주

- 주택금융 금고의 대출

- 아동수당법

- 아동부양수당법

- 복지수당법

등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5) 민족교육

민족학교의 억압, 폐지하는 방향으로 법적 단속을 했다

* 차관지침(次官通達) <조선인만을 수용하는 교육시설의 취급에 대해서>

* 1966, 67, 68년 <외국인학교법안>

<참고문헌>

• 朴鐘鳴, 「在日朝鮮人 歷史·現狀·展望」, 明石書店, 1995年

• 山田照美·朴鐘鳴, 「在日朝鮮人 歷史と現状」, 明石書店, 1995年

• 田中 宏, 「在日外國人 一法の壁、心の構一(第2版)」, 岩波書店, 1994年

• 姜在彦·金東勳, 「在日韓國朝鮮人の歴史と展望」, 勞動經濟社, 1989年

• 戰後補償問題研究會編, 「在日勸告朝鮮人の戰後補償」, 1991年

2. 오끼나와에서의 한국·조선인의 상황

가. 오끼나와전과 한국·조선인

조선인 군인, 군속, 조선인위안부

* 제2차세계대전 오끼나와조선인강제연행학살 진상조사단 '조사보고서'

* 武憲一 「오끼나와의 조선인들」, 『朝鮮研究』, 1959년 11, 12호

* 福地昭 「哀號 조선인의 오끼나와전」, 『月刊沖縄社』, 1986년

* 宮村順一他 『숨겨진 오끼나와전기』, JCA 出版, 1979년

* 三木健 『沖縄 西喪炭抗史』, 日本經濟評論社, 1979년

나. 복귀 전(1945년~1972년)의 오끼나와에 있어서의 한국 조선인의 법적 지위

(1) 전후 오끼나와가 처해 있던 법적 지위

(2) 전후 오끼나와의 외국인 정책

<류큐열도 출입국관리령> 1854년 2월 11일

민정부령(民政府令) 제125호

제1조 이 포고령은 미군요원 및 류구열도 거주자 이외의 모든 자의 류큐열도 출입국에 관한 관리 및 절차, 등록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류큐열도 거주자
이 포령에서의 류큐열도 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류큐열도에 본적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 현재 류큐에 거주하고 있는 자.

<영주허가에 관하여> 1954년 6월 21일 민정부지령(民政府指令) 제5호

이 지령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람은 필연적으로 민정부(民政府) 장관이 인정하는 영주자로 간주한다.

1945년 9월 2일 이전에 류큐열도로 정의된 곳에 거주한 자로, 그 이후에도 류큐열도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단, 그 이전의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 조사했으나 알 수 없음

* 법무국 출입국관리청 <류큐에 있어서의 출입국관리> 1986년 (현(縣)공문서관 소장)

(3) 전후 오끼나와에서의 한국 조선인의 상황

① 숫자의 추이

1945년~1954년 자료 없음

戦後沖縄における韓国·朝鮮籍者の数の推移

	在留者総数			韓国·朝鮮籍者の人数及び在留目的								
	総数	日本国籍	奄美出身者	総数	公用	一時訪問者	商用入域者	技術入域者	請負業者の被雇用者	永住者	軍要員	その他
1955	6,082	4,929	—	9	0	8	0	0	1	0	0	0
1957	5,571	4,260	—	10	0	8	0	0	0	2	0	0
1958	5,364	3,983	—	9	0	6	0	0	0	3	0	0
1959	8,484	5,359	—	27	0	13	0	0	0	3	11	0
1960	20,683	6,046	11,141	42	0	12	2	1	0	11	16	0
1961	21,489	6,575	10,817	52	0	15	1	2	0	11	23	0
1962	22,173	7,090	10,499	67	0	17	1	5	2	12	30	0
1963	22,561	7,029	10,254	92	0	28	1	5	3	13	42	0
1964	14,672	11,047	—	85	0	24	1	0	1	16	41	2
1965	15,862	10,857	—	97	0	46	1	0	2	16	30	2
1966	18,217	11,946	—	139	2	60	1	11	19	13	31	2
1967	19,804	12,132	—	155	0	84	1	17	12	12	27	2
1968	21,478	12,296	—	144	2	81	1	18	8	12	20	2
1969	23,611	13,029	—	166	5	95	2	27	5	12	18	2
1970	29,121	16,932	—	203	3	36	2	5	4	8	20	125
1971	31,372	18,506	—	290	0	100	4	32	0	6	22	126
1975	4,904	—	685									
1980	4,324	—	173									
1985	4,328	—	187									
1990	4,893	—	173									

* 下記の諸統計にもとづき報告者が作成。1955年~1959年までの数値は、琉球政府企画統計局『琉球統計年鑑』第1回(1957年)~第4回(1960年)参照。1960年~1964年の数値は、琉球政府計画局統計庁『琉球統計年鑑』第5回(1961年)~第9回(1966年)参照。1965年~1966年の数値は、琉球政府企画局統計庁『琉球統計年鑑』第10回(1967年)~第11回(1968年)参照。1967年~1971年の数値は同『沖縄統計年鑑』第12回(1969年)~第15回(1972年)参照。1972年以降の数値は総務庁統計局『平成2年国勢調査適用データシリーズNo.6 外国人人口・世帯数』1994年をそれぞれ参照した。数値は各年12月末日のものである。

* 1955年~1959年の数値は「国籍及び目的別在留者数」、1960年~1964年の数値は「国籍別、目的別入域者数」、1965年~1968年の数値は「国籍別登録外国人数」、及び1969年~1971年の数値は「国籍別、在留目的別、在留者数」に基づく。「国籍別、目的別入域者数」については「本表の数字は各月末在留者数である」と記されているため他と同義の数値として扱った。

* 1960年以降は「総数」の中に「奄美群島出身者」を含む。それ以前は含まない。

* 「軍要員」には米軍要員は含まれない。

* 原資料において1960年以前は「朝鮮」、それ以降は「韓国籍」とされているものを、本表では便宜上、一括して「韓国·朝鮮籍」とした。

1955년~ 『류큐통계연감』
1968년~ 『오끼나와통계연감』

② 상황

오끼나와전과 한국·조선인에 관한 문헌 중에, 전쟁 직후의 상황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이 있음.

③ 법적 제문제

다. 일본 복귀 후의 오끼나와에 있어서의 한국·조선인의 법적 지위

라. 이후 과제

- 일정의 존재하는 자료로부터 1955년 이후에는 한국·조선인을 포함한 '그 외의 외국 국적' 소유자는 약 600명에 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오끼나와전 당시의 군인, 군속, 위안부로 연행된 조선인은 훨씬 많을 것이나 패전 직후부터 이 시점까지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국적 소유자가) 왜 격감했는지, 그 사이에 어떠한 한국·조선인 정책, 법률 정책이 취해졌는지는 불명확하다.

→ 채록조사, 자료 발굴 필요

(説1) 소실된 호적을 다시 만들 때 일본인으로 신청한 사람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됨(『오끼나와의 재일조선인 문제』, 『오끼나와 인권협회 인권옹호의 발자취』, 8,9,10 합병호, 1978년)

(説2) 조선인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수용 본국에 송환하였다는 설

- (1955년 이후의 재일 외국인) 600인 중 한국 조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였는가는 불명

-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그들이 어떠한 법적 지위에 있었는가(국적, 외국인 관리 정책상의 제

의무, 참정권, 교육, 사회보장 등)는 불명
<류큐열도출입국관리령>, <영주허가에 대하여>와 같은 포고령, 지령의 실제 운용에 대해서도 불명
→ 각각의 법제, 지령 등에 대해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음
→ 채록조사 필요

〈참고문헌〉

- 在日世界大戰沖繩朝鮮人強制連行虐殺真相調査團, 「調査報告書」
- 武茂憲一, 「沖縄の朝鮮人たち」, 朝鮮研究, 1969年, 11·12号
- 福地昭, 「哀号 朝鮮人の沖縄戦」, 月刊沖縄, 1986年
- 宮村順一地, 「隠された沖縄戦記」, JCA 出版, 1979年
- 法務局出入管理廳, 「琉球における出入域管理」, 1968年(縣公文書館所藏)
- 鈴木宣幸, 「沖縄における在日朝鮮人問題」, 沖縄人人權協會, 人權擁護の歩み, 1978年 8·9·10合併号

서평: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

— 아라사끼 모리테루 지음, 역사비평사 펴냄 —

이유정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떠나기 한 달 전쯤 우편으로 『오끼나와 이야기』라는 책과 함께 참가자 전원은 모두 이 책을 읽어야 한다는 생각지도 않은 과제를 받았다. 과연 참가자 전원이 책을 읽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대부분의 회원들은 오끼나와로 떠나는 날 이 책을 지참하여 두 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벼락치기로 숙제를 하는 모습이었고, 심지어 숙제검사 차원에서 시험까지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열성회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숙제를 하지 않은 회원들은 교류회 기간 동안 다른 회원들의 '박식함'에 대하여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박식함'의 비밀은 한 시간이면 읽을 수 있는 『오끼나와 이야기』라는 150페이지 남짓한 책 한 권에 담겨 있다.

『오끼나와 이야기』의 저자인 '아라사끼 모리테루'는 1936년 도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시절부터 오끼나와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1957년 도쿄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후 '오끼나와 자료센터'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자료수집과 조사활동을 토대로 연구와 평론활동을 하여왔으며, 오끼나와가 일본에 복귀된 후 오끼나와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대운동과 반전 평화운동의 중심에서 활동해온 오끼나와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 '걸어다니는 오끼



나와 현대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내가 처음 이 책을 접한 것은 1998년 8월 제주 4·3항쟁 50주년을 기념하여 제주도에서 열린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의 확립>을 주제로 한 제2회 국제심포지엄에서였다. 참고로 말하면 위 심포지엄은 2차 세계대전 후 동아시아 각지에서 일어난 민중학살·탄압의 진상과 동아시아 냉전

구조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1회는 대만에서 제2회는 제주도에서 열렸고 제3회 심포지엄은 올해 10월경 오끼나와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 심포지엄에는 한국과 일본, 대만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특이한 것은 일본 사무국과 오끼나와 사무국이 별도로 있다는 점이었다. 오끼나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던 나로서는 왜 일본과 오끼나와가 별도의 사무국을 가지고 있는지 의아할 뿐이었다. 당시 회의장 입구에서는 이 책 이외에도 많은 책과 자료들을 잔뜩 쌓아놓고 판매하고 있었는데—나중에 역자 후기에서 알게 된 것인지만 이 책은 '국제심포지엄 일본사무국'이 제2회 국제심포지엄의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해 오끼나와에서 열릴 제3회 국제심포지엄에 대비하여 오끼나와의 역사를 한국에 소개하자는 취지로 번역·출판하였다고 한다—나는 오로지 않고(문고판 크기, 157페이지) 저렴한 가격(5천 원)에 이끌려 무심코 이 책을 집어들었으며,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마땅한 읽을거리가 없어 이 책을 꺼내들었다.

"한국의 독자 여러분 오끼나와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오끼나와를 '일본이면서 일본이 아닌 곳'이라고 하면 어떤 인상을 받게 되는지요?"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오끼나와의 전체인구, 면적, 기후, 역사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아열대 특유의 경관을 자랑하며 독자적인 역사에서 배양된 개성적인 문화가 있는" 오끼나와의 이면에는 미군기지의 75%가 전 국토의 0.6%에 지나지 않는 오끼나와에 집중해 있는 어두운 현실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오끼나와는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닌 곳이다"라고 적어놓았다. 그러면 오끼나와는 과연 어떤 곳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다음 장으로 갈 수밖에.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재미있어서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책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었다.

『오끼나와 이야기』는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오끼나와의 위치, 기후와 풍토 등을 2장에서는 오끼나와의 언어, 인종, 역사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3장에서는 메이지유신으로 근대 일본국가가 성립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독립국이었던 류큐국을 일본으로 흡수하여 오끼나와 현을 설치하게 되는 경위를 소개하고 있다. 여기 까지 읽으면 오끼나와가 일본이면서도 일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를 조금쯤 알게 되고, 어느 술자리에서 오끼나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히 '박식함'을 자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4장부터 8장까지에 소개되어 있는 오끼나와의 현대사에 관한 내용이다. 2차 대전에서 참혹한 전쟁터가 되었던 오끼나와, 전후 일본과 분리되어 미군정의 지배 하에 있었던 오끼나와, 그리고 1972년 일본에 반환이 된 이후에도 미군의 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기지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오끼나와의 현대사를 읽고 나면 '인권·평화·자립을 추구하는 오끼나와 민중들의 투쟁'에 대해 '아시아 민중'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피해의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관대함(?)도 생기게 된다.

저자의 시각은 일본이 느끼는 피해의식에 대한 반발감—이번 교류회에서 오끼나와 주민들이 2차대전때 숨어 있었던 '가마'(오끼나와 언어로 자연동굴이라는 뜻)에 들어갔을 때 안내자가 '이곳은 병원으로 당시 피고름 냄새가 진동을 했다'든가, '이곳은 시체안치소로 시체가 쌓여 악취가 진동했다' '주민들은 비오듯 퍼붓는 총탄을 피해 이곳(시체안치소 바로 옆)에서 생활했으며, 정신이상이 되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음식에 청산가리를 넣어 죽였다'는 등의 참혹한 상황을 열성적으로 설명할 때에도 일행 중의 누군가는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같다"는 비판을 하였을 정

도니 이런 감정은 한국인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지도 모르겠다—이 완화될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어떠한 전쟁이든 그것을 겪어내야만 하는 대다수의 인간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아니겠는가? 비록 그들이 침략국가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전후 오끼나와 주민들이 벌인 '섬 전체투쟁'(미군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탈하고 기지 건설을 위해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다는 정책에 반대하여 오끼나와 주민들이 저항한 대중운동)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미군기지 반환 운동의 역사는 이러한 체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일본에 복귀될 때 더 이상 자신들의 토지를 전쟁을 위해 쓰게 할 수 없다며 온갖 회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군용지임대차계약을 거부한 반전지주들의 투쟁과, 1995년 미군의 소녀성폭행사건으로 오끼나와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자 오타 지사가 미군용지 강제사용갱신절차에 협력하는 것을 거부하여 일본 수상이 지사를 상대로 직무집행명령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것이다. 두 사건 모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일본정부와 오끼나와 주민들 간의 투쟁이라는 점에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자는 오끼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 반환·철폐운동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민중들에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미일 안보동맹의 궤도 수정을 요구하는 투쟁으로 평화를 회구하는 아시아 민중들과의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기지를 다른 곳(한국)으로 옮겨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소멸'하는 방향에서 연대가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저자의 태도는 당면한 현안을 그때그때 해결하기에도 바빠—물론 위낙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도 하지만—국제적인 연대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우리 나라의

운동가들이 배워야 할 자세인 것 같다. 어쩌면 그것은 전문성의 차이인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전문성—하루 종일 쉬지 않고 귀가 따갑도록 오끼나와의 역사를 이야기하던 오끼나와 대학의 강사, 전쟁에서 죽은 군인들의 찢어진 옷가지, 칼날, 빗 하나까지도 모두 전시하고 있는 전쟁박물관, 전쟁피해자들의 이름을 모두 새겨놓은 수백 개의 위령탑, 그리고 반세기 동안 오끼나와 문제 하나에만 전념하여온 저자와 같은 사람들—은 결국 일본의 힘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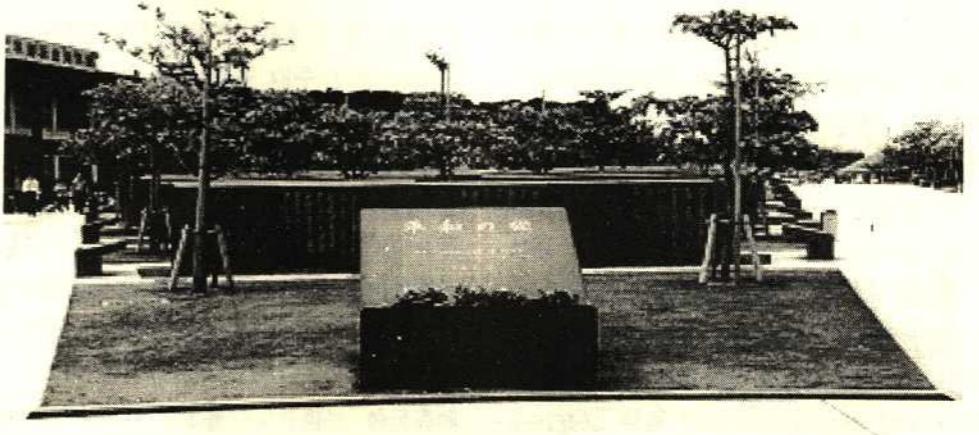
"오끼나와는 현대 일본의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다. "오끼나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곳곳에 새겨진 전쟁의 상흔과 패전국 일본의 상징으로서 미군기지"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로서의 모습과, 반전·평화운동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화두이다. 이 책을 통해 그러한 화두를 한 번쯤 생각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짧은 여정에서 얻은 참으로 큰 수확이었다. 우리에게도 "지하수가 마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와 "언젠가는 지상으로 분출할 때"를 준비하는 저자와 같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문가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러움과 함께. 또한 이 책을 미리 읽은 덕분에 이번 교류회에서 오끼나와의 아름다운 풍광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점도 하나의 보람이라고 하겠다. 물론 예습을 많이 한 탓에 막상 수업시간에는 딴 짓을 많이 하는 학생이 되기는 했지만.

만약 사정이 허락한다면 책 전체를 자료집에 실어도 좋을 정도로 오끼나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니 만큼 교류회에 참가하지 않은 회원들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오끼나와에 다녀와서—평가와 감상



첫날 리셉션장에서 한국측 참가자 소개



평화의 조석



한국인 위령탑 앞에서 참배하는 참가자들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평가모임

일 시 : 1999. 4. 6. 18:30

장 소 : 서초구 서초동 '화도'

참석자 : 윤종현, 임종인, 백승현, 박성호, 박찬운,
노정희, 김진국, 이유정, 최미희

사 회 : 백승현

정 리 : 이유정

사회 :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의 평가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평가모임이 한일 법률가 교류회의 준비과정과 진행상의 문제점들을 공유, 기록하고 그 대안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번 교류 회의 준비위원장인 임종인 회원께서 준비과정을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종인 :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는 한국측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장소와 주제의 선정, 일정 등을 한국측에서 주도적으로 준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일법률가교류회는 1990년 강경대 씨가 사위도중 진압경찰관에게 구타당하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후 위 사건에 관심을 가진 일본의 아즈사와 변호사 등 일본의 진보적 변호사들이 한국의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변과 교류를 하기 위하여 찾아온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변호사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류가 시작되었고 일본 측에서 행사의 진행을 주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992. 9. 경주에서 제1회 교류회가 있었고,

1994. 3. 오사카에서 제2회 교류회가, 1996. 11. 서울에서 제3회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제3회 교류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체가 되어 민변 회원이 아닌 변호사들에게도 참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비민변 변호사들은 5~10명 정도만 참가하여 사실상 민변이 주도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제3회 교류회를 마친 후 한일법률가교류회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만약 계속한다면 누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민변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1997. 1. 교류회의 준비를 담당할 일본특별위원회(현 동북아위원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997. 4. 저와 백승현, 윤기원, 한택근, 이찬진 회원이 일본을 방문하여 교류회의 준비를 담당하는 일본변호사들과 만나 교류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고, 일본에서도 민변과 같이 교류회를 준비하는 상설적인 단체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변호사들이 일한법률가교류협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1997. 10. 아즈사와, 고이케, 하야시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1998. 2. 저와 김진국, 노정희, 이유정 회원이 도쿄에서 열린 일한법률가교류협회의 창립식에

참가하여 제4회 교류회를 오끼나와에서 열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998. 10. 저와 윤종현, 조상희, 노정희 회원이 오끼나와에서 열린 교류회 준비모임에 참가하여 교류회의 구체적인 일정, 주제, 진행방식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1998. 11. 4. 동북아위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모임을 만들어 교통편과 숙박 예약, 구체적인 일정 마련, 논문 작성 등의 실질적인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회 : 임종인 회원께서 그 동안의 준비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3박 4일이라는 교류회 일정이 적절했는지, 또한 앞으로도 이런 정도의 일정으로 교류회를 하는 것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 이번 교류회의 일정은 오끼나와 직항노선이 목·일요일만 운행하는 관계로 그에 맞추어 정해진 것이었는데, 3박 4일의 일정은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운 : 2일째 미군기지와 전적지를 견학하는 일정은 오끼나와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이를 준비한 오끼나와 변호사들의 성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박4일의 일정은 매우 적절했다고 봅니다.

김진국 : 물론 회의 장소가 오끼나와인 관계로 3박 4일간의 일정이 불가피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 다음 교류회를 할 때 공식 일정을 3박 4일로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장소에 따라 일정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회 : 교류회 장소를 오끼나와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종현 : 장소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오끼나와는 2차 대전의 전적지이고, 동아시아에 있어 미군의 군사거점입니다. 이번 교류회를 통해 오끼나와의 역사와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으며, 매우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한국에서 교류회를 할 때에는 광주 또는 제주에서 하자는 일본 변호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회 : 그러면 토론회에 대한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주제가 적합했는가, 두 번째는 토론의 양과 질은 어떠했는가, 세 번째로 앞으로 토론주제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박찬운 : 토론회의 일정이 오전에는 강의, 오후에는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었는데, 보다 중요한 것은 주제발표와 토론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보다 중점을 두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사실 오전 강의는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임종인 : 오전에 오끼나와의 역사에 대해 강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참석자들 대부분이 미리 읽은『오끼나와 이야기』라는 책의 내용과 중복되는 감이 있어 지루했습니다. 또 <오끼나와에서 한국·조선인의 상황>이라는 강연은 강사가 일본인이라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강사가 한국 사람이었다면 재일 한국, 조선인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 이번 토론에서는 종전 교류회와 달리 분과별 토론 없이 전체주제만을 정하여 토론이 이루어졌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정희 : 분과별 토론 없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주제만을 가지고 토론한 것은 토론의 질을 높인다는 면에서 적절했다고 봅니다. 또 미군기

지 문제에 대해 지난번 교류회에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 하지만, 회의장소가 오끼나와였던 점을 고려해보면 미군기지문제를 주제로 선택한 것도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윤종현 : 저도 주제 선택은 아주 좋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처럼 양국 모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교류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토론의 양과 질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인 : 일본측 논문을 일본에서 번역을 해보내주었는데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금 자료집을 내기 위해 새로 번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통역은 매우 좋았습니다.

박찬운 : 일본측 논문의 분량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기지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오끼나와 변호사가 썼기 때문에 논문이 길어진 것이 아닐까요.

윤종현 : 지난 10월 오끼나와에서 준비모임을 할 때 논문의 분량을 A4용지 25매 정도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일본측에서 사전 양해 없이 지나치게 긴 논문을 작성하여 서로 균형이 맞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정희 : 사실 20매 정도로 분량을 제한하기에는 주제가 매우 방대했습니다. 주제에 따라 논문의 분량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분량을 제한할 것이 아니고, 주제에 맞게 분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양측이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운 : 일본측에서는 논문을 공동 집필했는데, 다음 교류회에서는 우리도 공동집필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 이번에 번역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 분량을 제한하였지만, 논문의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분량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꼭 분량을 제한할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발제시에 이를 압축하여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종현 : 어차피 즉석에서 발제를 듣고 이해할 수는 없고, 토론 전에 논문을 읽어야만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가자들이 논문을 미리 읽고 토론회에서의 발제는 짧게 하고, 대신 토론은 길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논문의 소목차를 미리 교환하여 발표할 내용을 사전에 조율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 : 1주일 전에 참석자들에게 논문을 미리 나누어주었으며, 토론회 전에 논문을 미리 나누어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토론회에서 발제시간은 길었습니다. 또 윤종현 회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목차를 교환하는 것만으로 사전에 내용을 조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찬운 : 목차를 교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집필이 진행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따라서 목차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알고 싶은 점, 상대방이 알고 싶은 점에 대해 사전에 조율을 하고, 기본적인 질문사항을 교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발제는 되도록 짧게, 토론은 길고 충

실하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에서 운영의 묘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진국 : 제가 한국측 사회를 맡았는데 일본과 오끼나와의 사회자들간에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아 오끼나와측 사회자가 갑자기 질문자에게 질문취지에 대한 발언을 요청하는 등 돌출적인 행동을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소한 하루 전 즈음 사회자들이 만나 토론 진행방식에 대해 합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질문과 답변은 총론부터 각론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반대로 각론에 해당하는 매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여 큰 줄기를 잡지 못하고 토론이 산만하게 이루어진 점은 잘못입니다.

사회 : 앞으로의 주제 발굴 또는 토론일정 전반에 대해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임종인 : 아까 지적한대로 오전 강의는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차라리 오전에 발제를 하고 오후에 토론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사회 : 지난번 교류회에서 토론회가 끝난 후 재일교포 변호사들과 모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번에는 토론회 후 그런 모임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과 전적지, 기지견학 일정은 어땠습니까.

윤종현 : 일본측의 세심하고 철저한 준비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오끼나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임종인 : 저는 2일째 견학일정에서 안내를 맡

은 강사가 참석자들이 피곤해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내용을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한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사회 : 이번에 배우자들도 여러분 동행하셨는데 참석하신 배우자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윤종현 : 무엇보다도 민변의 활동과 민변 회원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변 회원들 배우자들 간에 교류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임종인 : 준비위원회에서 배우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배려를 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들이 관광을 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본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사회 : 이번 교류회는 지난번의 교류회에 비해 많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체계적으로 준비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면은 없었는지, 앞으로 시정해야 할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박찬운 : 91년부터 교류회에 계속 참가를 했는데 이전에는 발제자에게 발제만 맡기는 정도로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에 비해 이번 교류회는 진일보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는 사전에 논문을 읽어보고 예상질문에 대해서도 준비를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그런 기회가 없어서 토론 전 날 현지에서 참석자 몇 명이 모여 준비를 했지만 미흡했습니다.

임종인 : 처음에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논문을 공동집필하기로 한 로펌의

신입회원들이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논문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하여 1개월을 허비하는 바람에 논문작성이 지연되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

노정희 : 이번에는 발제를 맡은 제가 논문을 늦게 작성하여 논문 평가의 기회를 갖지 못하였습니다만, 공동집필 방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필 전, 후에 공동으로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논문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종현 : 첫날 리셉션의 통역을 맡은 여성의 통역을 잘 하지 못하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절한 통역자를 구하는 것도 준비과정에서 꼭 확인해야 할 일입니다.

사회 : 교류회 주제가 민변 내부활동과 연결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미군 기지문제에 대해 이번 교류회 주제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민변이 실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성호 : 그래서 교류회를 위해 그때 그때마다 발제자를 정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회원들을 전문가로 육성하고 전문가가 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윤종현 :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전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민변에서 지원과 배려를 해야 합니다.

사회자 : 일본측의 준비는 어떠했습니까. 후지모토 변호사가 사망했는데도 일본측에서 아무런 차질없이 교류회를 준비한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종현 : 전체적으로 준비가 철저했고 환대를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박찬운 : 오끼나와 변호사가 공항에 나와 한국측 일행들을 마중하고 끝까지 배웅하는 태도는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또 오끼나와 변호사 몇 분이 집으로 초청해 주는 등 환대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 마지막으로 총 평가와 향후 전망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운 : 미군기지문제를 잘 모르고 참가했다가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는 미군기지를 둘러싼 소송 등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는데, 앞으로 민변에서도 교류회를 한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미군기지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 일본측 참가자들 중에 사법연수생이 많았는데 앞으로 우리도 교수, 사회단체, 전문가들에게 참석기회를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교류를 통해 양국의 전문가들이 만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김진국 : 이미 양국의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들간에는 교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일본에서는 환경소송과 관련하여 전문가들간의 교류를 원하였는데 우리측에서 환경전문가라고 할 만한 분이 없었습니다.

노정희 : 앞으로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들간의 교류와 같은 일상적이고 소규모의 교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찬운 : 미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운동단체들

과의 교류가 미약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러한 단체들과 연계할 기회를 찾고 구체적인 소송 등을 통해 민변의 역할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최미희 :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주영 회원이 '주한미군범죄근절 대책운동본부'에 관여하고 계시고, 임영화 회원이 운동본부의 정유진 사무국장을 인터뷰한 기사가 『이달의 민변』 97년 10월호에 실려 있습니다. 미군기지 문제를 다루는 사회단체들도 민변과 연계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와 영역은 넓습니다.

윤종현 : 이번 기회에 미군기지와 관련된 자료집을 충실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과 간단한 내용 등이 수록되면 좋겠고 가능하다면 미군기지가 있는 다른 외국의 자료들도 수집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사회 : 그것은 사무국에 바라고 싶은 내용입니다. 민변의 출판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변의 활동을 수록하고 자료화하는 작업(예를 들어 문고 형식으로 출판하는 것 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임종인 :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앞으로도 일본이 주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류회가 민변 회원들 개개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가자들 스스로 일본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여야 하고 보다 진지한 자세로 교류회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회의 주체는 앞으로도 민변의 동북아위원회에서 담당하여야 합니다.

사회 :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아까 지적한 대로 교류회를 실질적으로 학자, 사회단체 등에 개방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일 법률가교류회라고 하여 주제를 반드시 한일 양국의 문제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라 점입니다. 한일 간의 관계는 특수성이 있고 동아시아의 인권과 평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 어떠한 방식이 필요한지 연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남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임종인 : 그 동안 준비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준비위원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내용 있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윤종현 : 마지막으로 이번 교류회를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임종인 회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영도 회장님께서 준비위원들 모두에게 치하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사회 :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본측 발제자 평가와 감상

가토 유타카(加藤 裕)

번역 강개석

저는 이번 오끼나와 대회에서는 일본측 보고서의 일부 집필과 당일 그 보고를 담당할 예정이었으나 대회 직전에 사무국의 일도 겹하여 2 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대회일정 중 충분한 접대가 되지 못했던 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저의 대회 당일의 보고에 대해서는 참가자에게 사전배포한 보고서로 오끼나와 주둔 미군기지의 상세내용을 전하고 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보고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다음 몇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 오끼나와의 반미군기지운동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의 오끼나와전쟁에서 아군임이 분명한 일본군이 주민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아 많은 희생자를 냈다는 역사로부터 군대에 의해서 주민을 지킬 수는 없다는 비(非)군사의 정신으로 지탱되어 끈기있게 지속되어왔다는 점입니다.

둘째, 재판투쟁도 포함한 그 운동의 힘이 조금씩이지만 자라나서 96년의 후텐마 기지 반환합의 등의 성과를 쟁취하여왔다는 점입니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27년간의 미군지배 등이 원인으로 오끼나와는 경제기반이 취약하여, 오랜 불황의 영향으로 기지강압에 동반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경제진흥책에 유혹되어 기지의 오끼나와현 내 이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움직임도 생겨나고 있어 그것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오끼나와 주둔 미군기지가 아시아에 대한 가해자적 역할을 해온 점에 대해서 반기지운동 속에서 더욱 인식을 깊게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측의 주한미군기지에 관한 보고는 저도 거의 알지 못했던 한국의 미군기지의 실태와 국민의식을 가르쳐주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정도로 몰랐던 것에 저 자신 부끄러운 생각을 품었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미국 국방성이 수차 발표하고 있는 동아시아 전략보고와 국방보고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미군의 존재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일 뿐입니다. 즉 거대한 아시아시장에서의 미국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미국에 있어서는 주한이든지 주일이든지 주오끼나와이든지 그곳에 있는 미군기지에 어떠한 구별의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군기지 주둔지의 사정은 각각 다릅니다. 오끼나와에서는 주오끼나와 미군기지의 전면철거(오오타 전 오끼나와현 지사의 정책이기도 하였다)라는 의견은 현 주민들에게 비교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주한미군기지에 대해서는 조선반도의 정치정세에서 보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전면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점은 이해가 되고, 또 게다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한 대회에서의 한국측 참가자 다수의 발언에 대해서는 뉘앙스가 다른 여러 가지 발언이 나와서 매우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토론총괄에 해당하는 발언을 하신 고영구 변호사의 의견에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고변호사의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 외국군대가 주둔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라는 지적은 자칫하면 조선반도 정세의 토론 속에서 내버려두기 쉬운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한일의 공동운동의 토대를 만드는 커다란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미군기지인 이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군용지의 수탈, 소음과 토양오염 등의 환경피해, 미군과 군인 군속 등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오끼나와에서(당연하지만) 같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즉각 한일의 법률가가 함께 지혜를 짜내어서 같이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대회는 장래 미군기지가 없는 동아시아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군사력에 의존하지 않는 평화를 이 지역에 가져오기 위한 공동의 인식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토론할 시간이 있었으면 정말로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보고도 실제로 토론된 상기와 같은 문제인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의 인식을 보다 함께 하기 위해서 토론을 다음으로 넘김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공동의 운동이 가능한가를 탐색해가는 것이 과제입니다.

다수의 참가자

다수의 참가자, 특히 한국에서 다수의 참가자

가 와주셔서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이었습니다.

국적·국경을 넘는 다국적인 활동을 이 교류회의 앞으로의 목적·목표라고 한다면 이번 회합을 오끼나와에서 하도록 한 선택도(오끼나와의 지리적 위치·지금까지의 역사에서 볼 때) 매우 시사적이었습니다.

다만 재일한국인 변호사의 참가가 지금까지의 회합에 비해 적었다(2명)는 것은 유감이었습니다. 또 한국측에서는 주 오끼나와 한국인이 처한 상황·경우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희망이 회의 전에 나와 있었던 점에서 보면, 법률가 이외의 주 오끼나와 한국인의 참가 내지는 이들과 서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었으면 더욱 좋았다고 생각합니다(실제로는 주 오끼나와 한국인의 참가는 한 쌍의 부부밖에 없었던 듯합니다). 계속해서 이번 회합에는 오끼나와 사법서사회의 많은 협력이 있었고, 사법서사로서는 한국의 법무사와의 교류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이번 대회는 법무사의 참가는 적었다(없었다?)는 것도 앞으로의 토론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 내용

“오끼나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거의 지식이 없었다”라는 한국측 참가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끼나와에 오셔서 오끼나와의 현황에 접해주신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째의 전적 순례도 오끼나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으며, 일본인과 한국인을 같은 버스로 배정한 것도 교류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단, 저 자신은 계속 일본측뿐인 버스를 타야 했지만).

3일째의 강연 중 주 오끼나와 한국인에 대한 것은 “주 오끼나와 한국인의 현재의 법적 상황 등을 알고 싶다”는 한국측의 희망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만 저 자신으로서는

주 오끼나와 한국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적다는 사실과 그 이유로써 추측된 것에 대해서 흥미 있게 경청했습니다.

미군기지에 대한 토론은 시간상 이 정도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서도 특히 한국측의 다양한 의견이 감명 깊었습니다.

3일째 종료 후의 친목회에서는 한국측의 노래와 춤을 즐겼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번 전체회의의 시기·장소를 우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에 더하여 차기모임 전체회의까지의 사이의 활동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理想)적으로는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정하여 그것을 한일 공동으로 수행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되는 일로서는 ① 한일 공동으로 제3국에 대한 원조활동을 한다, ② 언젠가는 도달할 한일법 공동체(日韓法共同體)를 향한 문제점을 검토한다 등이 있습니다. 재일한국인의 입장에서는 (현실론을 억지로 무시하고 말한다면) 재일한국인에 대한 이중국적을 한일 양 법체계에서 허용하는 것 등을 꼭 검토해보고 싶다고 생각됩니다(신문보도에 의하면 현재 독일에서는 독일과 터키 이중국적의 허용이 현실의 정치과제로서 부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③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정보교환도 가능하겠지요. 무엇보다도 한일 재판관, 검찰, 변호사회끼리는 이미(그럭저럭 이지만) 교류를 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존의 교류와는 다른 특색을 우리들의 교류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교류의 실적을 근거로 이 교류회의 목적·목표를 어디에 둘 것인가(서로 알기 위한 목적의 명함 교환회를 넘는 목적·목표)를 토의할 필요가 고조되어왔다고 생각합니다(덧붙

여 말하면 한일공동체 내지 동북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해서는 모리시마 미치오 런던대학 명예교수의『일본의 선택』, 岩波同時代文庫, 1995.;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 岩波書店, 1999.).

오키나와 모임을 다녀와서

민 경 한

오키나와로 출발

오랫동안 민변 모임에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회원들도 만나고 싶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오키나와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처와 함께 오키나와 한일법률가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출발 전날 저녁에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부근의 화곡동 모텔에서 잤는데 잠을 설친 데다 아침식사는 기내에서 제공한다기에 전날 6시에 저녁을 먹고 다음날 10시 30분경에야 아침을 먹었으니 17시간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아 몸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상태로 오키나와에 도착하였다.

첫째 날(3월 25일)

일정이 빠듯하여 호텔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슈리성공원과 천연기념물인 옥천동 동굴을 구경하게 되었다.

슈리성은 류큐왕국의 궁전으로서 2차대전 때 거의 파괴되었으나 오키나와 본토 복귀 20주년인 1992년에 복원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었는데 깨끗한 것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것 같았다.

정전을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가도록 하는 게 이채로웠고, 납골당 구경을 하고 있을 때 김진국 회원이 납골당의 모양이 여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죽어서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로 그런 모양을 띠고 있다

고 설명했을 때 설득력이 있었으며 어쩔 수 없는 본능회귀현상인 것 같았다.

옥천동 동굴을 갈 때 대절한 버스 안에서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최봉태 회원 사모님이 자기 소개와 함께 자진해서 소양강처녀를 부른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외부인으로 오신 명노근 전 전남대 교수님과 텔런트 겸 성우이신 최병학 님의 민변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할 때 민변 회원으로서의 뿌듯함과 민변에 대한 외부인의 기대를 생각해 주었다.

천연기념물인 옥천동의 석회동굴은 총 길이가 890미터로 꽤 긴 동굴이었고 종유석이 아주 촘촘하였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보이고 있었으나, 미국의 여러 동굴들과 같은 조명의 배치나 음향시설 등으로 인한 자연과 인공과의 조화가 아쉬웠다.

뱀술을 상품화하고, 출구를 향해 갈 때 반드시 가게를 들러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일본인의 상술을 그대로 엿보게 하는 대목이었다.

여행 안내자가 통역 도중 오키나와를 '우리 나라'라고 곧잘 표현하고 곧 '독립할 것'이라는 농담을 하곤 했는데 한 개인의 생각인지는 모르나 일본 본토에 대한 반감이나 곧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배어 있는 것 같았다.

저녁에는 일본 법률가들이 우리 일행을 위한 환영만찬을 개최하였는데, 그곳에는 도쿄, 오사

카, 교토 등에서 온 변호사뿐 아니라, 사법연수원생, 법무사, 교수, 고교 선생님, 변호사의 가족 등도 상당수 참여한 게 이채로웠다. 사법연수원생은 51기 내지 53기생 중 오키나와, 한국 및 동북아 문제 등에 관심이 있는 청년법률가협회 회원들이었다.

공식행사 끝 무렵에 어느 고교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을 상대로 소송중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그 선생님이 쓴 말레이지아 여행기 중 ① 말레이지아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공해문제 ② 대동아전쟁 때 말레이지아인이 많이 죽은 문제 등에 관한 대목을 그 교장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일본의 교육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피력하고 법률가의 조언을 구한다는 진솔한 부탁 말씀이었다.

또 어느 할머니는 서울의 3회 대회 때 변호사인 아들과 함께 참석했었는데,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공부하고 많은 사람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때부터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잘 되지 않으나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한국과 일본의 우호증진에 이바지하고 싶다고 자신감과 희망에 찬 자신의 소망을 피력했다.

과연 우리 나라에서 내한한 일본의 변호사단체를 환영하는 공식행사가 열린다면, 제소중인 사건 당사자인 고교 선생님이나 변호사의 어머니가 과연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았다.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 자신의 느낌이나 소망 등을 표현하는 참민주적인 모임문화가 부려웠다.

둘째 날(3월 26일)

2차대전 당시의 전적지와 평화의 초석을 견학하는 날이다.

먼저 1975년 8월에 건립된 한국인 위령탑을 참배하였다.

다음으론 오키나와전쟁에서 전사한 20만 명의 사람들을 추도하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1995년에 건설된 평화의 초석을 견학하였는데, 평화의 초석에는 오키나와전쟁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이 모국어로 국적별, 도시별로 표기되어 있었다.

안내자의 말에 따르면 한국사람은 12,000여 명 가량이 전사하였는데 명단이 파악된 사람은 580여 명이며 유족들이 반대하여 그중 280여 명 만이 이름이 조각되어 있다 한다.

유족들이 반대한 이유 하나는 일본이 보관한 명단은 창씨개명한 이름인데 이를 공개하고 조각하는 것은 후손에 창피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근처에 가해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들과 동열로 새겨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라는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새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름이 조각된 비석 옆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백으로 남아 있었다. 역사적인 사실이나 교훈보다 체면과 형식을 중시하는 우리 국민 정서의 일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쓰레하였다.

또한 그 옆에 위치한 평화기념자료관에는 2차 대전의 종전 무렵 집단자살의 현장, 집단자결의 도구, 찢긴 옷, 깨어진 그릇 등이 생생히 보관되어 있었고, 동굴에서의 처참한 생활, 학도대 관계서류, 비밀관계서류, 포탄, 물통 등을 그대로 보관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일깨워주었으며, 수용소현황, 지역별 전몰자수 등도 기재되어 있었다.

系數豪라는 동굴은 자연적인 석회동굴로 보급소, 치료실, 사체안치소, 위안부대기소 등이 있었던 곳인데 당시의 처참한 생활을 실감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간 곳이 浦添城跡이라는 언덕이었는데, 미군이 슈리성을 공격하기 위해 확보하려 한 언덕으로 미, 일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병사 15,000명이 전사한 곳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1997년 4월 1일 건립된 요미탄촌 청사, 의회 건물과 쇼베통신소(elephant's cage) 등을 방문했다. 미군기지 반환운동, 미국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임대기간 연장 불승낙 등으로 인한 주민과 미군과의 마찰 등 오끼나와 민중운동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안내자가 열심히 설명하였으나, 오후에는 너무나도 피곤하여 집중력이 떨어지고 메모도 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

당시 우리의 안내자는 류큐대학 강사인데 다른 안내자와는 달리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와 저녁은 제 공치 않으니 각자 해결하라고 하여 내 처와 혼자 참가한 김동균, 차홍권 회원과 시내 중심가의 바닷가재 전문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저녁을 먹고, 조용한 카페 같은 곳에 가서 술 한 잔 하려고 가장 번화가로 가서 여러 가게를 들러보았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조용한 카페에 해당되는 곳은 없고 은밀하고 조그마한 이상한 술집만 있었으며, 그곳에도 빼끼가 있어 이상한 곳을 소개하려 했는데 너무도 비싸서 결국 잘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호텔로 돌아왔다.

처는 방으로 들어가고 셋이서 호텔 지하에 있는 바에 가서 웨이터에게 오끼나와 고유의 술을 주문하자 40%의 독한 큰 병의 술을 내놓았다. 피곤해서인지 조금 마셨는데도 금방 취하게 되었는데, 얼마 후 천나봉 회원을 비롯한 다른 회원 3, 4명이 합석하여 여러 가지 정담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헤어졌다.

셋째 날(3월 27일)

류큐대학에서 이번 모임의 주목적인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있었다.

한국측에서는 노정희 회원의 「주한미군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측에서는 가토 히로시 변호사의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의 현상과 문제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나는 10여 년의 변호사 생활 동안 하루종일 계속되는 주제발표와 토론회 참가는 처음이어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무척 걱정했는데, 양측 다 성실하게 준비하였고 내용이 너무도 유익하고 모두들 진지하여 피곤한 줄 모르고 열심히 경청하였다. 예정시간보다 1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오후 6시가 조금 지나 끝나게 되었다.

주제발표가 있는 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양측 다 상당히 예민하고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많았다. 노정희 회원도 훌륭히 대처하였고 박찬운, 장주영 회원의 보충답변도 명쾌했으며 민변 회원들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을 엿볼 수 있었다.

주제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이 끝나고 마지막으로 20여 분간(양측 10분씩) 토론 총정리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측에서는 고영구 전회장님의 하게 되었다.

나는 정리 내용에도 너무 공감하였을 뿐 아니라,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조사 하나까지 놓치고 싶지 않을 정도의 너무도 세련된 화술에 경탄하였는데, 다른 참석자들도 이구동성으로 감탄하였다.

혹시 녹음이 되었다면 참석치 못한 회원들을 위해 당시 발표·토론한 주제에 대한 문제점의 정확한 파악과 뛰어난 화술을 엿볼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나하시내 연회장에서 일본 변호사들과 식사와 술, 노래 등으로 흥겨운 시간을 가졌고, 끝난 뒤에는 민변 회원들끼리 2차로 가라오케에 가서 술과 노래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변호사모임이어서인지 일반 단체여행 때 흔하게 볼 수 있는 아침 출발시간에 늦는다거나 낙

오자가 생긴다거나 충동구매 등을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출발 이틀 전 이유정 회원으로부터 여행에 대한 보고서(기행문)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한 뒤로부터 여행 동안 내내 기행문에 대한 부담이 컸다. 수많은 여행을 했지만 메모를 하면서 여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많은 민변 회원과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토론회 내용도 참 유익하였으며, 메모를 하면서 여행을 한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

오끼나와 단상(斷想)

손 광 운

오끼나와를 다녀와서 나는 제주도를 떠올렸다.

1년 전인가. 서준식 씨가 구속된 계기가 된 다큐멘터리 필름(제목은 지금 잊어버렸다)을 보았는데, 제주도의 4·3사건을 다룬 것이었다. 그 필름을 보고 지금까지 10번 이상 정도 가족들을 데리고 놀러갔던 제주도가 50년 전에 수많은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된 곳이었다는 사실에 차를 떨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었는데, 오끼나와를 다녀오면서 똑같은 비극이 이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니 기분이 참 묘했다.

2차대전 당시 오끼나와에서는 일본 본토의 총알받이 역할을 한 10만여 명의 시민 등 무려 20여 만명이 전쟁으로 숨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억울하게 죽은 이치를 따져보면 이렇다. 일단 10만의 시민들은 당시 아무 죄도 없었다.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미국이나 일본 천왕을 상대로 싸울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평화의 이름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본토 사수 등의 명목으로 개처럼 양쪽으로부터 총을 맞고 죽어가야 했다.

잊지 못할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곳이었지만 오끼나와는 더없이 한가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였다. 겨울에 휴가차 한 번 오겠다는 마음을 먹게 할 정도로 말이다.

오끼나와의 아픔은 그들만의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 코리안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었다. 왜

냐하면 적어도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역시 전쟁터에서 이유도 모른 채 산화했기 때문이다. 이들의 혼적은 고작 평화의 초석이라는 공동묘지 한 구석에 비명으로 남아 있을 뿐이었다.

이 묘지에 평화라는 이름으로 오끼나와 전역에 총을 쏘고 포를 퍼부었던 미국인들도 같이 묻혀 있다는 점도 특이했다. 살아서는 적과 아군으로 나뉘어 실컷 싸우다가 죽어서는 같이 묻혀 있는 사실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게 다가왔다.

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지만 오끼나와는 여전히 숙제를 풀고 있는 상태다. 수십 년 전 그들의 삶을 동기야 어찌되었던 송두리째 빼앗아버린 미군들이 섬의 주춧돌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요즘 유럽에서 일어나는 코소보전쟁을 떠올려본다. 전쟁의 동기도 그때와 똑같다. 무고한 인명의 살생을 금지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방법도 똑같다. 바다에서 쏘아대고 하늘에서 폭탄을 퍼붓는다. 결과도 비슷하다. 불쌍한 코소보 난민은 양측에서 공격받아 죽고, 지도자 잘못 만난 죄로 유고 시민도 큰 피해를 입고 있으니 말이다.

역사적으로 인류의 희망은 평화라고 하지만 여지껏 전쟁이 그친 적은 없다. 오끼나와나 제주도의 비극은 코소보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도 역시 아픔을 지닌 곳이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사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한 이때다.

오끼나와의 독립군

이 보희

1.

내가 이번 오끼나와 여행을 결심한 것은 순전히 남편(천낙봉 변호사)의 말을 잘못 해석한 탓이었다. 지난해 말, 남편은 퇴근하여 돌아와서는 “내년 3월말에 오끼나와에서 미군기지문제에 대한 회의가 있는데 관광도 할겸 당신과 아이들도 함께 신청했어”라고 한 마디 불쑥 꺼냈다. 순간, 나는 ‘온 가족이 함께 해외 여행을!’ 처음 하는 해외여행에 대한 호기심과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 편안한 마음으로 무조건 O.K 했다.

새벽 5시부터 잠에 골아 떨어진 아이들(천서영 여 5세, 천재영 남 3세)을 업고 안고 집을 나서 공항에 도착하자 최일숙 변호사님의 딸 임정원(7세)이 보였다. 우리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 같아 좀 민망했는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비행기에 탑승하자 아이들은 청룡열차를 탄 것처럼 신나했다. 그리고 심각하게 질문했다. “엄마, 구름이 왜 비행기 밑으로 갔어?”

2.

오끼나와에 도착하자, 더운 날씨가 처음에는 반가웠으나 한편으로는 우리 장마 때처럼 습한 기운이 있어 상쾌하지는 않았다. 오끼나와 관광 첫날, 관광 안내를 맡은 오끼나와족 가이드로부터

터 “오끼나와는 일본이 아닌 오끼나와다. 나는 일본 사람이 아닌 오끼나와 사람이다”는 인사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다. 아니 오끼나와에 웬 독립군이! “오끼나와 사람은 세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식 이름, 일본식 이름, 오끼나와 이름, 또 오끼나와에서는 단순한 관광가이드가 아닌 오끼나와의 역사와 현재 처한 현실을 설명하는 평화가이드가 있습니다. 물론 오끼나와가 일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가이드의 설명은 들뜬채 오끼나와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지난날 류큐 왕국의 수도였던 슈리의 슈리성이었다. 슈리성은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소박함이 오히려 정겨운 2층의 목조건축이었다. 목조건축 내부는 관광객에게 전부 공개되어 있어 신발을 벗고, 신고 부산스레 움직이는데 내 눈길을 끈 것은 우리나라의 고궁에서 흔히 보이는 ‘출입금지’ 패찰이 없다는 점이다. 문화의 차이일까? 생각하다 아이들이 보이질 않아 둘러보니 오끼나와의 풍경을 조금이라도 마음에 담아두기를 바라는 엄마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큰아이는 나뭇잎을 주워 사람들에게 나눠주느라 정신이 없고 작은 아이는 “개미, 개미” 소리지르면서 개미를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다.

오끼나와의 교통난도 대단해서 별로 멀지도 않은 거리인 호텔까지 한 시간 넘게 걸렸다. 관광으로 훌린 땀을 제대로 닦을 새도 없이 일본 측과의 친목모임 시간에 참석하게 되었다. 의사 소통이 되지 않아 혹시라도 눈이 마주치면 어떡 하나 어색해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찾았다(연회장에는 콜라 등 음료수만 있었음). 어쩔 수 없이 안내원에게 “워터”라고 된발음으로 말을 하였는데도 알아들어 물을 마실 수 있었다. 또한 아이들이 내 눈을 벗어났을 때에도 손짓몸짓으로 아이들을 찾을 수 있게 되자 묘하게도 일본에 대한 친밀감이 느껴졌다. 이런 것이 아시아권의 동질감일까?

3.

다음 날 아침, 조금이라도 아이들 잠을 더 재워볼까 하여 늦게 깨우는 바람에 아침식사도 하는 등 마는 등 전적지 및 미군기지 시찰을 위해 버스에 올라탔다. 그런데 어제와 달리 오늘은 일본측 참가자들과 함께 같은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일본말 가이드와 한국말 가이드가 동행하게 되었다.

조금 앉아 있으려니까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는 어딘가 낮이 익은 사람이 올라탔다. 그가 형제 재일교포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옥고를 치른 서승씨라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일본인 평화가이드의 열정적인 설명이 중간중간에 이어졌으나 뒷자리에 앉은 나에게는 잘 들리지 않아 애를 먹고 있는데 내 앞자리에 앉은 서승씨의 보충설명이 많은 도움을 주었다

“오끼나와는 일본 본토로의 전쟁확산을 막기 위한 전초전으로서 막대한 희생을 치루었으며, 그 결과 현재도 미군기지의 75%가 전국토의 0.6%에 지나지 않는 오끼나와에 집중되어 있고, 그로 인해 경제발전이 뒤져 있습니다”라는 오끼나와 가이드의 설명이 있자, 서승씨는 “높이

솟은 건물과 잘 닦여진 거리를 가진 일본 본토와 오끼나와가 다르지 않느냐, 오끼나와가 일본의 어느 도시처럼 느껴지느냐”고 우리들에게 다짐 반 질문 반으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우리 일행 중에는 일본이 초행인 사람이 많아서 그의 바람처럼 답변을 하지는 못했다. 나는 열대성 나무만 제외하면 깨끗한 바다와 해안이 잘 어울어진 모습이 일본식 건물이 남아 있던 남해안의 통영시와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도시 전체가 회색빛을 띠고 있어서 좀 어둡고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우리가 도착한 평화의 초석에는 오끼나와 전쟁에서 희생된 20만 명의 전쟁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미군 희생자의 기념비도 함께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추모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아우를 양으로 양측의 희생자들을 함께 모신 듯하나 어색함은 멀칠 수 없었다.

한국인 희생자의 기념비는 오른쪽 맨끝에 세워져 있었다. 희생자의 수는 일만 명이라고 들었는데 비에 새겨진 이름은 몇백 명에 불과했다. 그 이유가 기념비에 이름을 새기면 그 후손들은 한국인이라는 오명 아닌 오명을 무릅쓰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는 재일한국인의 현실에 가슴이 아파왔다.

섭씨 2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 탓에 자판기에 서 콜라를 뽑고 있는데 아이들은 일본인 버스 안내양과 함께 ‘코코코 귀, 코코코 머리’ 놀이를 하면서 까르르 웃고 있었다. 일본인 안내양은 하루 종일 관광을 하면서 내내 우리 아이들과 친절하게 잘 놀아주어서 고마운 일본인으로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

다음 관광지는 일본해군사령부 지하방공호다. 큰아이가 버스 안에서 자고 있어 바람이나 쏘일

겸해서 잠시 버스에서 내렸더니 그 사이에 버스는 아이를 태운 채로 떠나가 버리는 게 아닌가! 버스는 방공호 관광이 끝날 때쯤에야 다시 오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서 남편과 나는 작은아이만을 데리고 지하방공호로 들어갔다. 방공호 안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과 진흙바닥으로 손전등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깁깝했다. “여기는 환자병동, 여기는 화장실” 하며 설명하는 가이드의 말은 뒷전으로 하고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 서둘러 밖으로 나왔다. 한참을 기다리니 관광버스가 왔다. 버스 안을 들여다 보니 서영이가 엄마! 하고 밝게 웃었다. ‘이상하네 서영이가 혼자 떨어져 있었는데도 안 울었네’ 생각하며 흐뭇해 했는데, 그것은 곧 황국자 여사님(고영구 변호사님의 부인) 덕분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황여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여 버스에 남아 계셨는데 서영이가 깨어나 엄마를 찾으며 우는 것을 보시고는 “애야, 우리 집에는 다섯 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걔는 엄마 없이 혼자 있어도 절대 안 운다”고 말씀하시자 자존심이 강한 여섯 살 천서영은 갑자기 눈물을 뚝!

버스가 가데나 미공군비행장을 한 바퀴 도는 동안 이를 동안의 관광으로 피곤해진 나는 가이드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중에도 들판에 출다리를 몇 번이나 반복하였다. 그러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전히 비행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과연 오끼나와는 온 천지가 미군기지였다.

이날 저녁은 전체 여행일정 중 유일하게 주어진 자유시간이었다. 여럿이 함께 관광안내서를 보고 물어물어 유명한 스테이크집을 찾아, 손짓발짓으로 겨우 음식을 시킬 수 있었다. 역시 세계공통어는 바디랭귀지군!

4.

오끼나와 여행 셋째날, 오늘은 오끼나와대학에서 미군기지 문제로 양국 변호사들간의 회의가 있는 날이다. 배우자도 참가하는 오전회의에도 아이들 때문에 참석할 수가 없어서 회의장을 나와 오끼나와대학을 돌아다녔다. 우리나라 대학들의 너른 정원과 운동장들에 익숙한 나에게는 낡은 건물만 빼곡하게 차 있는 오끼나와대학이 웬지 초라해 보였다.

드디어 오후 관광, 아마 우리의 전체 일정 중 가장 관광다운 관광인 듯했다. 아열대지역의 기후 탓일까? 해변이 나른하고 아득해 보여서 바닷물에 발도 못 담그고 잠깐 앉아만 있다가 민속박물관으로 향하였다. 류큐민속박물관에서 제일 먼저 간 곳이 ‘망고와 하비’의 전투장이었다. 이름만 듣고 우리는 사람들이 나와 싸우는 건 줄 알았다. 정작 들어가 보니까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가운데가 막힌 투명한 네모상자 안에 망고(죽제비과 동물)와 하비(뱀)를 넣고 무언가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었다.

이것은 뱀가루, 이것은 뱀의 독, 기름, 뱀을 또 아리 튼 채 말린 것 등등. 어째 이거 약 선전 아니야라는 생각이 슬슬 드는데 10분 넘게 설명하던 것이 끝나고 상자의 가운데 막이 열리자 망고가 하비에게 뛰어들어 하비의 목을 잡고 늘어졌다. 잔뜩 긴장해서 보고 있는데 제대로 기 한번 못 퍼던 뱀은 1분도 안 돼 망고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

“에이 시시하다” 하고 일행들이 일어서 나오는 길에는 아니나 다를까 기념품들이 즐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그런데 망고는 없고 하비(뱀)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었다. 몸에 좋다는 하비의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시는 어느 분 옆에서 “아니 망고가 싸워 이겼으면 망고가 더 썰 텐데, 왜 하비만 팔지?” 하는 한 사모님의

말씀에 일행은 한바탕 웃고 쇼핑도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다.

저녁식사는 나하시내 연회장 L 빠삐리용이라는 음식점에서 일본측 변호사와 친목회로 진행되었다. 참가는 자유였지만 참가비는 전체비용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가 비싼 일본 땅인지라 절대 빠질 수 없었다. 대충 우리의 희망대로 적당히 배를 채운 뒤 나하시의 중심가 곡사이도리를 거닐었다. 백화점에서 울리는 종소리, 산들거리는 바람, 물건을 사기 위해 여기저기 몰려 다니는 관광객, 아! 그래 여기가 오끼나와구나. 이런 생각에 잠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것이 신기했는지 서영이는 드디어 벼르던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엄마, 왜 일본사람은 영어로 말해?”

5.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면서 행선지를 묻는 택시기사에게 무조건 ‘에어포트’를 외쳤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며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 뭐라고 뭐라고 물어보길래 무조건 예스하였다. 사실 우리는 그 동안 바디랭귀지로 거의 의사소통이 되어서 이 날도 무사할 줄 알았다. 택시운전사가 내려주는 대로 공항에 들어서자 도착할 때와는 달리 공항은 사람들로 와자지껄하고 발을 디딜 틈조차 없을 지경이었다. 게다가 우리의 일행은 한사람도 만날 수가 없었다. 이상하다는 생각에 공항 관계자에게 ‘인터내셔널 에어포트’라고 말을 걸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다. 간신히 영어를 알아듣는 사람을 만나 그곳이 국내선 공항이라는 사실을 알고 부랴부랴 택시를 다시 타고 국제선 공항으로 와서 무사히 한국으로 올 수 있었다.

후덥지근한 오끼나와에 있다가 한국에 도착하니 창한 날씨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비

록 오끼나와에 비하여 추운 날씨였지만 비로소 큰 숨을 쉴 수 있었다.

나는 오끼나와 여행을 다녀와서야 비로소 주최측에서 사전에 나눠준 오끼나와에 대한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오끼나와 사람들이 왜 미군기지 철수를 주장하면서 그토록 열성적으로 여기에 매달리는지를 좀 더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자유를 찾으려는 갖은 노력을 하는 오끼나와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리고 함께 했던 우리 일행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주셨던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소중하게 간직하며 그 분들에게 고마움의 인사를 보낸다.

일본이면서 일본이 아닌 오끼나와

최병학 (성우, 텔런트)

오끼나와! 일본을 몇 번 가봤어도 일본이면서 일본이 아닌 옛날의 류큐왕국이었던 오끼나와에 대해선 꽤나 궁금했었다. 그 궁금증을 무엇이든지 알고 배우고자 하며 유머 감각으로 멋있는 삶을 구가하고 있는 임종인 변호사 덕분에 풀게 되었다. ‘한일법률가 교류 오끼나와대회’에 참가하는 한국 민변과 동행하는 기분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대회 참가 32명—이렇게 많은 변호사와의 만남은 처음이다—가족까지 합쳐 53명이니 대식구다.

공항에서 맨 먼저 이기욱 변호사를 소개받으면서부터 엘리트요 높은 자의식에 둘러싸여 있는 왕자(?)님일 줄 알았던 변호사에 대한 선입견이 그 소탈함과 수수한 인간미에 어느새 내 마음은 오랜 지기를 만난 듯 풀리기 시작했다. 동행한 부인들의 소박함도 통속적인 나의 관념을 깨도 수정케 하였다. 하기사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돋고 사회정의를 구현하겠다는 법학도의 푸른 정신을 실천하겠다는 민변 변호사들에게 어찌….

서울에서 오끼나와 나하 공항까지 2시간 반정도 걸리는데 동경보다 10여분 덜 걸린다. 조선시대엔 류큐 왕자가 조선을 방문하고 교역도 하면서 역사적으로 관계유지가 되었던 가까운 거리다. 기내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 하는 사이 비행기 창으로 내려다보니 어느덧 오끼나와의 섬들이 구름사이로 점점이 보이기 시작한다.

비행장에서 호텔까지의 길은 열대와 아열대의

나무들로 어울리는 남국의 풍물이 나그네의 호기심을 채워준다. 3월인데 벌써 우리의 5월의 온도다. 바람 불 때는 시원한데 바람이 없으면 기온이 우리의 한 여름이다. 습도 탓인가?

오끼나와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나하시, 나하의 가장 번화한 중심 거리인 고쿠사이(國際거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단체손님, 신혼, 가족동반 등 폭넓은 층이 이용하는 본격적인 시내 호텔인 퍼시픽 호텔에 여장을 풀고 ‘마음의 점’(點心)을 썩은 뒤 관광을 나섰다.

슈리성. 나하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에 자리잡은 옛 류큐왕조의 궁성이다. 성이라야 별로 크지 않다. 몇 개의 궁문을 지나니 옛 류큐왕조의 영광을 오늘에 전하는 ‘정전’이 화려하게 나타난다. 161개의 기둥과 약 6만장의 붉은 기와에 여러 가지 조각과 채색이 훌륭하게 조화된 류큐건축의 걸작이다. 류큐왕조의 의식 및 예술문화의 무대가 된 붉은색과 흰색의 선이 산뜻한 정전 앞 광장 오른쪽의 ‘남전’은 경비 경호용 건물로 일본 규슈지방의 자치영지 사초마번에서 온 관리들의 접대소이기도 했는데 일본 양식의 건물이다.

정전을 향해 왼쪽의 건물 ‘북전’은 관청 및 사당으로 또한 중국 책봉사의 접대소로도 쓰였는데 중국 양식의 건물이다. 일본과 중국과의 등거리 외교를 위해 궁정 안의 건물조차도 두 나라 건축양식으로 지어야 하는 약소국의 일면

을 보는 심정이 미묘하다. 남전 안의 류큐 왕들의 초상을 보며 웬 유비? 했다. 그뿐인가! 정전 앞 광장의 중국 책봉사 앞에서 거행되는 류큐왕의 책봉식 모형도는 동양권에서의 한족의 그늘 이 예까지 뻗혔구나 싶다.

교쿠센토(玉泉洞). 석회암 종유동굴이다. 공개되고 있는 길이는 약 800m, 총길이는 약 5km로 약 100만여 개의 종유석과 그 형태의 다양함 때문에 동양 제일이란다. 이곳 종유석은 지금도 자라는데 1mm 자라는 데 3년이 걸린단다. 동굴을 나오면 왕국촌, 학생들에게는 학습장이기도 하다. 열대과수원, 류큐 도자기 유리공방, 종이 공방, 산센악기 공방, 술도가, 류큐 옛날 배 전시장, 코브라와 그의 천적 맹구스의 결투장 등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류큐 독사 하부를 목에 걸고 기념 촬영도 할 수 있다. 류큐 무더위에 아이스크림이 더 달구나.

저녁엔 1999년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리는 '한일법률가교류회 오끼나와 대회' 리셉션이 일본측 주최로 퍼시픽 호텔에서 열렸다. 일본측에서 100여 명, 한국측 50여 명이 참석하여 정갈하고 맛있게 차려진 음식과 칵테일로 말은 잘 안 통해도 같은 관심사(미군 기지 문제)에 이심 전심되어 돈독한 분위기가 이뤄졌다. 일본 대표의 환영사와 민변 최영도 회장의 답사, 그 외 여러분의 축사 등등 시종 공동 관심사에 대한 얘기에 진지하면서 화기애애했다. 일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최봉태·박정숙 부부의 개량 한복은 우리 나라 옷의 멋을 보였고 준비해온 정성이 아름다웠다.

여홍으로 벌어진 류큐 민속무용단의 민속춤, 류큐 가락에 맞춘 동작이 느리면서도 단조로웠지만 독특한 맛이 있었다. 북방 기마민족의 사냥하는 기질이 보이는 우리 가락은 빠르고 춤사위는 움직임이 크고 화려한 편이다. 그러나 류큐 춤은 남방의 농경 어업 민족이어서인지 생기질에 그물 던지고 낚시질하는 크기의 작은 움직

임에다 느린 것 같다. 반복되는 가락과 동작이었지만 새로운 구경이었다. 춤사위가 때로는 로보트의 움직임 같은 가라데 춤은 재미를 더했다.

공식 리셉션이 끝나고 일본측에서 한 잔 더 하고 싶은 사람은 하시라고 '오끼나와의 밤' 지도를 친절스레 프린트해서 돌렸다. 대한의 정열 가들이 어찌 객지의 밤을 무위하게 보내리오? 몇몇은 오끼나와의 풍정을 즐기려 가고 나도 이젠 갔군 하고 뇌이며 오끼나와의 기념공연을 생각하면서 방으로 돌아왔다.

관광 이틀째. 이또가즈(伊原)의 동굴. 1945년 오끼나와 전쟁시 야전병원이 있던 동굴이다. 좁은 굴 입구를 들어가면 넓은 굴이 전개된다. 깜깜한 동굴이라 미리 손전등 하나씩 배급받고 들어갔다. 굴 안이 울퉁불퉁 거칠다. 그래서 미리 여자들은 편안한 신발을 신으라고 한 것이다. 부상병 치료구역, 취사구역, 시체 안치구역, 우물 등등의 패밀이 세워져 있는 동굴 안은 꽤나 넓었으며 돌담도 있다. 사탕수수로 만든 지붕의 집도 있었단다. 아니 웬 정신병동 패밀? 적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 상황일 때는 목숨이 순간적으로 오가는 극한상황이 오랫동안 전개되면 극도의 긴장과 스트레스로 미친 사람이 생긴다는 말이 이해간다..

히메유리라 불리우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200여 명의 특별지원 간호부대도 있었다는데 이 동굴 속에서 "천황을 위해 죽기보다는 더 살고 싶다"고 절규하면서 꽃다운 나이로 죽어갔단다. 상처난 곳에 들끓는 구더기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을 해야 하는 부상병들은 마취약이 없어 못한다 하자 "아파도 좋으니 수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다니 목숨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알겠다. 동굴 속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체험을 맛보기 위해 잠시 손전등을 모두 끄고 깜깜함을 체험했다. 침묵 속에 떨어지는 물소리만 들리는

데 간간이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동굴 속엔 민간인도 같이 있었다는데 배고파 우는 아이라도 생기면 자기들의 위치가 들킬까 두려운 군인들은 엄마에게 아이를 없애길 명하고, 우는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간 엄마는 얼마 후에 혼자 굴 속으로 들어왔단다. 민간인들은 미군으로부터 피난은 물론이거니와 일본군으로부터도 자식을 보호하는 데 피를 말려야 했단다. 전쟁시에 가장 불쌍한 건 아이들이다. 코소보 사태에서도 보듯이. 전쟁아, 너 지구를 떠나라.

오끼나와전 당시 미군이 들어오면 남자는 탱크로 밀어 죽이고 여자들은 강간을 한다는 소리가 퍼져 차라리 그럴 바엔 깨끗이 내 손으로 죽이고 나도 자살하자 하는 가족 집단 살해가 유행처럼 번졌단다. 이는 또한 "살아서 포로의 굴욕을 받지 말라"는 군인들에게 내려진 교훈이 민중들에게 침투한 영향이기도 했다.

오끼나와전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시대를 잘못 만나 남의 나라 전쟁에서 억울하게 죽은 혼령들을 위로하기 위해 세운 위령탑이다. 임종인 변호사의 제의로 잠시 혼령들을 위한 묵념을 했다. 박 대통령의 휘호로 쓰여진 비석과 능처럼 넓고 둑글게 쌓은 위령탑의 돌들은 모두 한국의 각 도에서 가져온 돌이란다.

평화의 초석. 태평양 전쟁, 오끼나와 전쟁에서 생명을 잃은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기념비공원이다. 초석 건립의 취지는 1. 전사자의 추도와 평화의 기원 2. 전쟁의 교훈과 계승 3. 안락과 배움의 장소로 20여만 명의 이름을 새긴 예술성이 보이는 조형물이다. 그 중 우리 민족 179명의 이름도 새겨져 있다.

평화의 초석 공원 내의 광장 중앙엔 평화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1995년 6월 23일 위령의 날의 일출 방향에 맞추어 만들어진 공원 중앙으로가 반듯하다.

평화의 공원이 있는 마부니 언덕은 그곳까지

밀린 일본군이 떨어져 죽은 자살의 절벽이다. 그때 이를 본 미국군 일본인 2세가 "여러분, 귀한 목숨 버리지 마루고 투항해서 포로가 되어 사시 부시오"하고 스피커를 통해 방송하자 일본인 2세의 서투른 일본어가 '악마의 소리'로 들려 오히려 자살을 재촉했단다.

전쟁을 상기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평화기념 자료관에는 전쟁시의 처절한 상황을 보여주는 옷, 살림도구, 총 등 전쟁 유물을 전시하여 그 비참함에 마음이 쓰라리다. 학생들의 위령 실매듭이 참담함을 달래고 있다.

1,400엔 짜리를 1,000엔에 할인한 뷔페를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식당에서 들었다. 오끼나와는 돼지고기 요리가 다양하다. 돼지 족발을 푹~과서 꼭 애저탕처럼 연하고 야들야들하게 나온 것이 맛은 괜찮은데 새우젓이 없어 아쉬웠다. 돼지고기엔 새우젓이 궁합 맞느니.

흔백의 탑. 무명의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해 조그마한 공원을 만들어 탑도 쌓고 혼령을 위로하고 있다. 작은 것도 챙기는 일본인의 꼼꼼스러움이 보인다. 전적지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보는 것은, 오끼나와전쟁을 상기하고 또 폐전도 서러운데 또다시 미군기지로 인한 오끼나와의 불편한 심기를 보이려는 이번 대회의 이면의 뜻이 있기 때문이리라.

후텐마 헬리콥터 비행장. 미군들이 상륙했던 해안 가까이에 있다. 미군 기지 안을 보고 싶어 하는 궁금증을 채워 주려는 듯 작은 언덕 위에 2층 전망대까지 새로 만들어 놓고 구경을 시킨다. 한눈에 군 기지를 내려다 볼 수 있다. 이상 하군. 우리 나라 같았으면 말도 안 되는 행위다. 미군들이 처음 상륙할 땐 소풍 오듯이 여유작작 했단다. 도시 주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 좋은 전망대였다.

카데나 미공군 기지. 수원 5공군의 모(母)기지다. 넓은 곳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제트기들이 장치되어 있는 망원경을 통해 보니 보일

정도다. 언덕에 올라 군기지를 보는 것도 이상한데 망원경에 밀리터리 룩 웃장사까지 있다. 군기지 안엔 못 들어가더라도 넘겨보게라도 하는 것은 별로 보여줄 관광자원이 없는 오끼나와의 관광 차원의 배려인지도 모른다. 감시원의 눈치를 보며 기지를 배경으로 기념 사진 한 컷을 서둘러 찍어야 하는 적과 대치상태에 있는 우리와는 또 다른 정서다.

오늘 관광을 안내해준 우네 에쓰꼬 상의 끈질긴 설명으로 많은 내용을 알 수 있었다. 통달한 전쟁 얘기를 힘도 안 들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끔은 얘기를 뛰어 넘기도 하련만—자신의 끈질긴 의지를 보이려는 듯 말의 높낮이도 별로 없이 평조로 얘기하는 그녀의 집념에 감탄하면서 말이다. 오끼나와 여성들은 비교적 인물이 없다. 머무는 동안 한번도 눈동자를 크게 키우면서 시선을 보낼 수 있는 여성은 못 보고 왔으니 '통석의 념'을 금치 못하겠다.

오늘 저녁은 각자 해결하기로 되어 있다. 로비에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본 변호사 댁에서 몇 사람을 저녁 초대를 한다기에 임 변호사가 나도 가자해서 일본 가정을 볼 수 있는 기회다 싶어 염치(?) 없이 응했다. 인원이 넘어 임번은 빠졌지만 나는 여행기를 쓴다는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며 과감하게(?) 갔다. 사회적인 위치에 맞지 않게 정말로 작은 평수의 집이나 깨끗했다. 가구들은 원목을 써 고급스러웠다. 거실에 상 놓고 20여 명이 '블루벨스'처럼 앉으니 꽉 찼다. 손님을 초대하면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 우리네와는 달리 정갈한 음식이 가짓수 많지 않게 초청한 숫자에 맞춰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게 알맞은 양을 차려 놓았다. 주부의 지혜가 보이는 것 같다. 맛도 좋았다. 딸과 가사 선생 하던 친구의 솜씨라면서 요리사를 소개한다. 남편은 변호사인데 머리가 예술가같이 길다. 그래서 당신은 예술가같은 멋이 있다고 칭찬했다. 그 부인은 어제 리셉션장에서 나한테

영어로 말 걸던 분이다. 영어 발음이 일본 발음 수준을 넘었다. 일본 소주에 나폴레옹 고냑까지 마셨다. 내가 가져간 한국의 명주 진로소주 팩 5개도 내놓았다. 조촐하면서 정이 담겨 있는 대접을 받고 왔다.

셋째 날. 오늘 토요일은 오끼나와대학 강당에서 이번 대회 주제인 미군 기지문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한국측에서는 노정희 변호사가 '주한 미군의 기지 사용의 실태와 문제점', 일본측에서는 7인의 집필자에 의한 '오끼나와 미군기지의 현상과 문제점'이란 제목의 발표를 한다. 제목만 봐도 주제를 알 수 있다. 미군 주둔 아래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범죄와 사건·사고, 기지 주변의 자연적·인문적 환경 파괴, 면세 특혜 등으로 인한 경제 질서의 혼란 등을 야기시킨 것이다. 또한 한미 상호 방위조약과 한미 행정협정의 내용과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한국인 노무자의 처우 등 제반 문제점을 짚어 보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적 상황이 오끼나와도 똑같은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치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오끼나와는 패전국이라는 것 때문에 긴 시간 여러 가지를 감내하고 있는 것에 못 견뎌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가까운 나라끼리 동병상련적인 하소와 더불어 해결책을 머리 맞대고 궁리해 보자는 것이다. 보소, 우리는 일제 식민지의 후유증으로 남북 분단으로 한 세기 가까이 고통을 받고 있소.

오전 스케줄인 오끼나와 관련 강연이 끝나고 도시락을 먹은 뒤 변호사들은 심포지엄을 계속하고 가족들은 오후 관광을 나섰다. 관광 떠나는 사람들은 지루한 토론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해했지만 저녁 때 들은 얘기론 고영구 변호사의 명쾌한 토론 총정리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제 풀이가 진지하고 보람 있었다니 다행이었다.

류큐촌. 옛 오끼나와의 문화를 전하기 위해 건설된 민속촌으로 류큐열도 각지의 낡은 건물을 옮겨 지어 후세를 위해 보존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오끼나와 유일의 염색법이 있어 처음에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여성의 의상으로 만들어 졌으나 점점 왕족의 의상으로 발달한 빙가타라는 염색의상이 있다. 오끼나와의 지붕 위에 앉아서 악귀를 쫓는 붉은 색의 돌사자 모양도 눈을 끈다. 물소 달구지가 돌리는 연자방아가 사탕수수 줍을 짜서 흑설탕을 만드는 광경은 오끼나와에서도 류큐촌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것이다. 물소와 물소를 끄는 아주머니의 걸음걸이가 재미있다. 중국식 과장법으로 표현하면 한 시간에 한 발짝씩 걷는 것이 웃긴다. "왜 그렇게 느리게 걸어요? 걷기 싫어서예요?" "아녜요. 이렇게 걷는 것이 우리 일예요."

쇼 하우스에서는 어서 들어오라고 재촉이다. 시간 맞춰 벌어지는 오끼나와의 독사 하부와 그의 천적 망구스와의 결투 쇼다. 3~40명 앉을 간이 의자에 거의 다 꽉 차니 가운을 입은 약장사 겸 진행자가 만병통치 '비암'약을 한바탕 선전하고 드디어 하부와 망구스 사이의 칸막이를 들어올리니 망구스가 뱀 칸으로 넘어가 하부의 목덜미를 물고 이리저리 흔들어제낀다. 하부는 망구스의 몸을 감으려 안간힘을 쓰고 망구스는 작은 몸을 요리 빼고 조리 빼고. 뱀의 몸뚱이가 망구스를 감기만 하면 압박해서 작살을 낼 텐데 안타깝구나. 항복했다고 입을 꺽 벌린 하부를 보고 땅꾼이 꼬챙이로 뜯어 말리고 하부를 껴냄으로써 결투는 끝났다. 신기한 구경이다. 보고 나오는 코스에서는 뱀가루로 만든 정력제를 시식시켜가며 팔려는 상술이 극성이다. 류큐촌이 마지막 관광이다.

저녁엔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의 뒤풀이가 빠삐리옹이라는 술집에서 있었다. 한국측은 전원, 일본측은 스무 명이 넘게 참석하여 흥겨운 뒤풀

이가 진행되었다. 반전가수 겸 작곡가인 빠삐리옹 주인과 두 명의 종업원 아가씨의 써빙과 노래가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주인의 친구라는 방랑객 같은 장발 사나이의 피리 솜씨 또한 일품이었다. 박주현 변호사의 피아노 반주는 딱딱한 직업인의 예술성을 보였고, 홍성우·정경남 부부의 합창은 소 닭 보듯 하는 사이가 아님을 과시했고, 고영구 변호사의 일본 노래 솜씨에 일변들이 혀를 내두르고, 머리에 넥타이 질끈 동여매고 자리가 좁다고 휘저으며 부른 민경한 변호사의 각설이 타령은 흥겨움의 피크였다.

민변 식구들이 다함께 어깨동무하고 부르는 '솔아 솔아 푸르른 솔아'는 민중을 위해 일하는 곧은 정신을 가진 민변의 주제가 같아 찡~한 감동이 일었다. 일본 변호사들도 어깨동무하고 부른 미군 사격장 반대 시위 노래는 가사 내용은 모르더라도 비감한 멜로디가 좋아 악보를 하니 청해 받아오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 통역 하랴 여러 가지로 다양한 수고를 한 서승 교수의 노래 역시 그의 삶의 열정을 느끼게 했다. 두 나라의 민요, 가요, 민중의 노래 등등 독창과 합창, 어깨동무의 어울림은 저들이 남남인가 싶을 만큼 정겨웠다. 한마디로 '죽여주는' 분위기로서너 시간이 어느새 흘러 버렸다. 밤새자 밤새! 안될 말! 아쉬운 석별의 악수를 나누고, 흥겨운 여운을 이기지 못해 몇몇 대한의 풍류객들은 이밤을 연장시키려 갔다.

이리하여 오끼나와의 3박4일 일정은 모~두 끝나고 말았던 거디었다!

한일법률가교류회에 참가하고

오노데라 요시카타(小野寺 義象)

번역 강개석

저는 일본의 동북지방의 중심도시 센다이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끼나와 회의에는 센다이에서 저, 고세키 마코토, 쇼우지 가즈히코 3명의 변호사가 참가했습니다.

제가 이 회의에 참가한 것은 일본정부의 외교 정책에 위기감을 감지하고 그것을 개혁하려면 일본 국내만의 평화·인권옹호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아시아인들, 특히 동업자인 법률가·변호사와의 연대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의 외교특징은 미국 추종, 아시아 경시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신 가이드라인' 법안은 미군과 일본이 일체가 되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압력 하에 일본국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중의원(하원)에서 가결되어 현재 참의원(상원)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또 일본정부는 아시아에의 침략전쟁을 마음으로부터 반성하고 있지 않고, 그 전쟁은 아시아를 유럽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전쟁이었다고 발언하는 관료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일본이 아시아에서 다시 전쟁을 으킬 위험성은 날마다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실감입니다.

그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를 지키는 국제적인 연대와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

제에 대해서 한국의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오끼나와를 향했습니다(오끼나와의 요리를 먹고 싶은 바람도 있었습니다만).

이 회의에 참가해서 한국의 많은 변호사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귀중한 체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지문제에 몰두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우리들과 공통점이 있다고 느끼는 한편 북조선과 접한 한국의 안전보장 문제는 일본과 비교해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막연하지만 느꼈습니다. 김대중 정권의 핵별정책에 공감을 느끼면서 조선통일 후에도 미군기지를 존속시키는 데에는 의문도 느꼈습니다.

어쨌든 저의 한국과의 교류는 막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교류를 증진하여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새로운 친구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한일법률가 연대회의 방법에 대한 희망은 '보고는 짧게, 토론은 길게, 그리고 깊게'입니다. 그리고 회의에서는 회의의 성과를 어필 등의 형태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또 2년에 한 번의 회의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연락도 하고, 서로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 가를 서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하면 저는 지금 센다이에서 일본

국 헌법의 평화주의,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운동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17건의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 중에는 '안중근의 혼과 치바 도시치(千葉十七: 안중근의 간수)의 묘'의 방문, <한국독립의사 안중근과 치비 도시치> 강연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본의 동북지방에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꼭 알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한국어를 전혀 할 수 없고, 읽지도 못합니다. 어학공부의 필요성도 통감했습니다.

2001년에는 광주를 방문했으면 합니다. 일한 법률가의 연대를 위해서, 그리고 광주의 요리를 위해서.

기타 자료

일한법률가교류협회 결성식 참가보고서

이유정

동북아특별위원회 회원 4명(임종인, 김진국, 노정희, 이유정)은 지난 1998. 2. 25. 동경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일한법률가교류협회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일한법률가교류협회는 1990년 이래 계속되어온 일한법률가교류협회의 상설적인 모임으로 110명의 학자와 변호사가 참가하고 있다. 결성식에는 우리의 예상보다 두 배쯤 많은 50여 명의 일본 변호사들이 참석하였다. 그날은 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기도 하여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하여 이런저런 덕담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이 진행되었다. 다음에서는 결성식의 내용을 식순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또 '일한법률가교류협회'라든가 '일한법률가교류'와 같은 용어는 '한일법률가교류협회' '한일법률가교류회'와 같이 우리식으로 고쳐 쓰지 않고 그대로 인용하고자 한다.

1. 개회사

고이케 신이치로 변호사

1990년 일한법률가 교류가 시작된 이후 교류를 위한 상설적인 조직이 탄생한 것을 축하한다. 오늘은 마침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기도 하다. 일한법률가교류협회 결성을 계기로 두 나라 사이의 우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2. 강연

가. 일한법률가교류에 기대하는 것

강사: 서경식(호세이대학 강사, 서준식 씨 동생)

1970년 한국에 유학중이던 서승, 서준식 형제가 체포되었을 때 한국에는 이들을 지원할 만한 후원세력이 없었고 형들은 아무런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당시 일한법률가교류협회와 같은 조직이 있었다라면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듈다. 형들은 재판을 받은 이후 가혹한 고문 속에서 전향할 것을 강요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조직과 수단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70~80년대의 한국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지금도 상황이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 단적인 예로 1997년 한국정부는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라는 영화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씨를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한법률가교류협회가 일본 내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을 비판하고 상대방 국가에서 일어나는 인권탄압에 외교적인 압력을 가하는 역할을 해낼 것을 기대한다. 이 모임이 인권에 관한 정보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교카드로 사용하려는 국가간의 교류와는 달리, 진정한 민간교류로서 상호간의 인권상황과 인권탄압의 피해자 문제, 70만명이나 되는 재일조선인 문제에 관하여 마음을 열고 교류, 연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 김대중 정권과 향후 일한관계
강사: 이까리 아끼라(아사히신문사 편집위원)

오늘은 한국 최초의 민주정부인 김대중 정권이 출범한 날이다. 1969년 한국에 특파원으로 부임하였을 때 3선개헌으로 인하여 한국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나는 경찰, 내무부 치안국 직원들, 중앙정보부 직원들로부터 동향조사를 받았고 도청과 미행을 당하였다. 내가 작성한 기사가 검열에 의해 삭제당하는 일도 많았다. 3선개헌 이후 치루어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씨는 근소한 차이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패배하였으나, 관권의 개입과 부정선거임을 고려하여볼 때 이는 사실상 이긴 것과 다름없는 결과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면서 나는 언론활동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다행히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폭넓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졌고 김대중씨는 대통령 출마선언을 한지 27년만에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나는 김대중씨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으며 그가 오랜기간 야당으로 생활하며 고통을 겪은 만큼 더욱 잘해나갈 것으로 믿는다. 물론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는다.

3. 경과보고

후지모토 다다시 변호사

일한법률가교류협회에는 110명의 학자, 변호사가 참가하였고 결성식에는 약 50명의 변호사가 참석하였는데 이처럼 예상을 넘는 호응은 일한 연대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저지른 과거의 잘못 때문에 반일감정이 아직 남아 있지만, 일한은 먼 옛날부터 교류를 하여온 이웃 나라로서 21세기를 앞

둔 지금은 연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일한법률가교류는 인권, 자유, 평화를 공동의 가치로 하는 성숙한 민간교류이다. 내년 3월 오키나와에서 예정된 일한법률가교류회를 통하여 한국에서도 오키나와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처럼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기를 바란다.

4. 축하인사

임종인 변호사

한일법률가교류에 있어 한국에는 민변이라는 단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러한 상설 단체가 없는 점을 아쉽게 여기던 중 일한법률가교류협회가 결성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일한법률가교류협회의 결성은 한일법률가교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5. 규약안에 대한 설명

아즈사와 변호사

일한법률가교류협회 규약(안)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일한법률가교류협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다음에 열거하는 각호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의 친목과 교류를 긋게 한다.
2. 일본과 한국의 법률제도·문화의 상호이해를 깊게 한다.
3. 양국의 법률·판례 등 필요한 정보를 교환 한다.

4. 일본과 한국의 과거역사를 감안하여, 상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다.
5.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일본과 한국의 법률가가 공동으로 아시아의 법률가와 교류를 심화시켜나가는 데 협력한다.
6.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유용한 행동을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는 동경에 사무소를 설치한다.

제4조(회원)

1. 본회의 규약을 인정하고, 회비를 납부하는 법률가는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본규약에서 법률가는 변호사, 재판관, 검찰관, 법률분야의 연구자, 사법연수생을 말한다.
3. 본회에 입회하려는 자는 서면을 본회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회비 등)

1. 본회의 회비는 1구좌에 연 3,000엔이며, 회원은 1구좌 이상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본회는 회비와 찬조금으로 운영한다.

제6조(조직)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1. 대표이사 약간명
2. 부대표이사 약간명
3. 상임이사 약간명
4. 이사 약간명
5. 사무국장 1명, 사무국차장 약간명
6. 감사 2명

제7조(총회)

1. 본회는 2년에 1회 총회를 개최한다.
2.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제8조(상임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대표이사, 부대표이사, 상임이사로 구성한다.
2. 상임이사회에 이사, 회원이 참가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는 총회를 대신하여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대표이사, 부대표이사)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고, 부대표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한다.

제10조(사무국)

1. 사무국은 본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제반사무를 처리한다.

2.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통괄하고 사무의 수행에 책임을 지며, 사무국차장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제11조(회계)

사무국장은 연1회 총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감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6. 임원 선출

대표이사: 이토 가즈오, 구마가이 히사유끼, 후지모토 다다시

부대표이사: 마쓰우라 모모유끼, 다카기 구니오

사무국장: 아즈사와 가즈유끼
사무국차장: 고이케 신이치로, 다나카 시게히도, 구와하라 이꾸로, 요네꾸라 쓰또무, 하야시 가즈오, 은용기

7. 폐회사

다나카 시게히도 변호사

일한법률가들이 3회의 교류를 거치고 오늘 이처럼 일한법률가교류협회를 결성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 모임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오끼나와 한일법률가교류회 준비회의 참가보고서

노정희

1. 내년 3월에 열릴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

가. 제4회 한일법률가교류회(이하 교류회라 한다)가 내년 3월 일본 오끼나와에서 열린다. 96. 11. 초 서울에서 제3회 교류회가 있었는데, 이후 그에 대한 평가회의가 97. 4. 일본 도쿄 근처 아파미에서 열렸고, 97. 10. 서울에서 다음 모임 준비를 위한 회의가 있었다. 그때 제4회 교류회는 99. 3. 일본 오끼나와에서 열기로 결정하였고, 이번 준비회의는 내년 3. 오끼나와에서 있을 교류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주제를 정하기 위한 준비회의였다. 준비회의 참석자는 윤종현 사무총장, 임종인 동북아특위위원장, 조상희 변호사와 나였다.

나. 교류회는 7년 전 도쿄의 아지사와, 후지모토 변호사 등이 민변에 교류 및 연대를 제안하여 이루어졌고, 최초의 교류회는 92년 9월 경주에서 '종군위안부와 일본의 책임'을 전체토론 주제로 하여, 두번째 교류회는 일본의 고베에서 94년 3월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과 '일본의 사법개혁과 변호사/변호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인 96년 11월 서울에서 '미국의 한국 주둔에 관련된 제반 법률문제'와 '일미지위협정 재검토 요구와 오끼나와 현민의 투쟁' 등을 주제로 제3회

교류회가 있었다. 위 각 교류회에서는 위 전체토론 이외에도 형사, 노동, 산재, 국제인권, 법조양성제도 등 참가한 변호사들의 관심영역에 따라 나뉜 분과토론이 병행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위 교류 및 연대에 있어 한국에서는 민변이 중심적인(또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러한 상설단체가 없음에 대한 우리측 문제제기로 금년 2월경 일본측에서도 '일한법률가교류협회'가 결성되었다. 위 교류협회에는 110여 명의 변호사와 학자가 참가하고 있다. 98년 2월 25일 도쿄에서 있었던 위 교류협회의 결성식에는 50여 명의 일본 변호사와 법학교수들이 직접 참석하였고, 당시 한국에서도 민변을 대표하여 임종인, 김진국, 이유정 변호사와 내가 함께 참석한 바 있다.

2. 오끼나와 준비회의 일정 및 참가자 등

가. 김포와 오끼나와를 잇는 데는 2시간 20분이 걸렸다. 오끼나와대학 교수 아라사끼 씨(우리는 이 분을 오끼나와에 도착한 첫날 만나 점심을 함께 하였고 오끼나와에 관하여 많은 말씀을 들었다)가 쓴 『또 하나의 일본, 오끼나와 이야기』(번역본, 역사비평사, 1998)에 의하면, 오끼나와현은 우리 나라의 거의 정남향에 있는 섬 56개로 이루어져 있고 오끼나와현에서 가장 큰 섬이 오끼나와섬이다. 현의 인구는 120만 명 정도

이고 도(현)청 소재지는 인구 31만 명의 나하시이다. 메이지 시대 전까지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을 받는 반 독립적인 유구왕국을 유지해 일본 본토와는 말과 풍토, 문화가 매우 달라 '일본이 면서도 일본이 아닌' 곳이다. 태평양전쟁 때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미군과 지상전이 있어 본토 방위를 위한 사석작전으로 10만 명 이상의 오끼나와 민간인이 사망했고, 45년부터 72년까지는 미군정통치를 받았으며, 72년 일본에 반환된 후에도 전 일본 국토의 0.6%에 불과한 면적임에도 일본 미군기지(일본 미군은 약 4만명이다)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95년 미군에 의한 오끼나와 초등학교 여학생 윤간사건이 있어 오끼나와의 미군은 모두 철수하라는 주민운동이 크게 일어 미국과 일본 오끼나와 간에 큰 문제가 됐고, 한편 해양성의 아열대기후로 날씨가 늘 따뜻하고 경치가 좋은 천혜의 관광지이기도 하다.

나. 비행기 일정 차이로 준비회의 전 이시가끼섬을 들렀다가 10월 3일 오후 3시 30분 즈음 나하공항에 도착하자. 오끼나와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는 가토 변호사가 우리를 마중나와주었다. 그의 말대로 작은 그의 승용차(우리 마티즈 정도의 크기였다)로 우리는 오끼나와 준비회의가 열릴 오끼나와현 여성종합센터 내 회의실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도착함으로써 준비회의에는 한국측 변호사 4인, 동경에서 온 변호사 3인, 오오사까 변호사 1인과 오끼나와 현지의 변호사 및 법학교수 7인이 참석하였다.

다. 참석자 소개가 끝난 후 참석자들 중 민변에 대하여 잘 모르는 오끼나와 변호사들과 교수를 위하여 윤종현 사무총장님이 민변에 대해 간단히 소개의 말씀을 하였다(통역은 임종인 변호사). 그 후 후지모토 변호사의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는 지난 5월 민변 10주년 기념식에 와 보고 민변이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또한 일본에 알리고 싶다는 말씀이었고, 다음 변호사협회장 선거에 민변 변호사가 당선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여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회의를 시작하였다.

3. 내년 3월 교류회의 일정, 토론주제 및 방식

가. 99년 3월 오끼나와 교류회의 일정

내년 3월의 오끼나와 교류회의 일정은 당초에는 금요일부터 월요일의 일정으로 하려 했으나, 비행기 사정으로(김포-오끼나와 간 비행기가 화, 목, 일요일밖에 없다) 3월 25일(목)부터 3월 28일(일)까지 개최키로 하였다.

그 세부일정은

- 99. 3. 25.(목) 12:00 오끼나와 도착, 휴식
- 3. 26.(금) 미군기지, 2차대전 전적지 순례 및 친교모임
- 3. 27.(토) 강연 및 토론회,
오끼나와 향토예술관람
- 3. 28.(일) 귀국
으로 결정되었다.

나. 99. 3. 오끼나와 교류회의 토론주제 및 방식

강연 및 토론의 주제와 방식에 관하여는 2시간 30분간에 걸쳐 난상토론이 있었다. 토론회 주제에 대하여는 일본 본토(오끼나와 사람들은 일본 본토, 일본 본토인이라는 말을 썼고 이 말은 여러 의미로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되었다)측에서는 기지문제와 재일한국·조선인문제를, 오끼나와측에서는 미군지위협정의 내용과 운용을 둘러싼 문제점, 전후보상문제, 부부별성제(일본제도)와 동성동본불혼문제(한국제도), 오끼나와에 있어서 한국인의 상황 등을 제안하였

고, 우리측에서는 아시아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법률가의 역할 내지는 소액주주운동 또는 노동 문제, 그리고 미군기지문제와 국가인권위원회문제 등을 제안하였다. 내년 교류회를 오끼나와에서 개최하는 취지에 비추어 세 당사자 모두 미군기지문제를 제안하였고 대체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자는 데 동의하는 분위기였으나 지난 96년의 교류회때 이미 개괄적이나마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 조금 걸림돌이었다.

그런데 주제를 정하는 논의 도중, 몇 개의 주제를 정하여 토론할 것인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다. 이는 3회 교류회까지는 보통 전체토론 한 번, 3개 주제에 대하여 참석자를 셋으로 나누어 분과토론회 한 번 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는데, 분과토론회를 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에 대하여는 분과토론이 생각만큼 심도있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 4개 주제의 발제글을 쓴다는 것이 현재 역량상 무리라는 점, 참석자 모두가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전체토론 한 번만 하자는 견해와 분과토론 없이 예상되는 참석자 90여 명 전체가 모여 한번 전체토론만 한다면 대부분의 참석자가 토론에 참여치 못하게 되어 참석자 대부분이 소외된다는(손님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 분과토론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립되었다. 타협안으로 전체토론만 하되 2개 주제를 하자는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전체토론 1주제만 하기로 결정되었다. 지난 96년 11월 서울에서 전체토론을 할 때 질의, 응답, 토론이 매우 활발하였는데, 토론시간만 많이 허용된다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도 있는 토론회가 될 수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공감인 듯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발제는 가능한 한 짧게, 통역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 2시간을 모두 토론에 투여하기로 하였다.

그 후 다시 토론의 주제에 관하여, 일본측에

서 최근 한국의 경제위기상황에 관한 호기심으로 한국의 경제위기와 노동문제 혹은 규제 완화, 법률가의 역할 등에 관한 발표, 토론 등을 기대하였으나, 경제위기문제를 다루더라도 한국측에서 한국상황에 관하여만 브리핑하는 식은 곤란하고 반면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주제가 너무 크고 어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결국 오끼나와에서의 교류회를 하는 취지를 살려, 일본측과 오끼나와측(이는 오끼나와측 대표인 긴조 변호사가 쓴 표현이다. 그는 오끼나와가 일본에 속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다고 농담조로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이 모두 토론주제로 하기로 제안한 미군기지문제를 전체토론회 주제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초 우리측은 이번 준비회의 전부터 오끼나와에 대하여 알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도쿄, 오사카 변호사들이 이를 받아들여 오끼나와 진보적 변호사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유하여 내년 교류회를 오끼나와에서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토론회를 하기 전에 오끼나와를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오끼나와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을 듣기를 원하였는데, 일본측도 자신들도 모두 오끼나와에 대하여 잘 모르니 듣고 싶다고 동의하여 오끼나와측에서 강사를 교섭하여 모든 참석자들이 듣는 강연회를 갖기로 하였다. 또 우리는 2차대전때 오끼나와에서 희생된 한국인 군인, 군속, 군무원, 종군위안부 수가 1만명을 넘는 사정이 있고(이 한국인 희생자 위령비가 오끼나와 바닷가에 있다), 일본에서 회의를 하면 재일한국인문제에 대하여 알 기회를 따로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서(94년 고베·오사카 회의에서는 우리가 재일동포 활동가 다섯 분을 초청하여 재일한국인의 역사, 교육, 통일관, 단체 등에 대하여 듣는 의미 있는 기회를 가진 바 있다) 우

리 한국인 참석자들만 따로 시간을 내어 오끼나와에 사는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오끼나와에서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듣겠다고 하였더니, 일본인들도 모두 함께 듣기를 원하여 2개의 강연회를 전체토론회 전에 갖기로 하였다.

그러한 경위로 결정된 3. 27.(토) 강연 및 토론회의 구체적인 일정은,

오전 9:30 - 12:00 (2시간 30분) 특별강연
제1. 오끼나와의 과거와 현재
제2. 오끼나와 한국인의 과거와 현재
오후 2:00 - 5:00 (3시간) 전체토론회
<아시아의 평화와 한국·일본 미군기지문제>
이다.

다. 그리고 위 토론회의 한국측 발제논문(한국어, A4용지 20매 분량)은 99년 1월 말까지 일본으로 보내고, 일본측은 99년 3월 10일까지 자료집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번역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어 교류회 전에 미리 읽을 수 있게 하기로 하였다.

라. 내년 교류회 참석자 수는 일본측 30명, 오끼나와측 30명, 우리 30명 합하여 90명 정도로 예상하였다. 오끼나와는 우리도 가기 힘들지만, 도쿄에 있는 사람도 가기 힘들어(비행기로 서울-오끼나와 2시간 20분, 도쿄-오끼나와 2시간 30분) 가능하면 부부동반으로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의하였다. 배우자들의 관광코스도 연구하기로 하였다. 우리 참석자들도 될 수 있으면 (날씨와 경치가 좋은 일급 관광지이니) 부부동반으로 참석함이 좋겠다.

마. 그런데 일본측에서 우리 참석자들의 호텔예약 및 식사준비는 한국측에서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다. 일본 대표인 후지모토 변호사

는 지난 94년 고베·오사카 회의시 일본 오사카 변호사가 우리측 변호사들의 호텔 및 식사 예약을 담당했는데, 그는 우리 변호사들이 참석 번복, 취소가 지나치게 잦아 호텔 및 식사, 교통 등의 예약을 하였다가 취소하고 또 변경하느라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호텔 및 식사 예약을 우리가 하기로 했다. 동북 아특별위원회 변호사가 이를 담당해야 할 터인데 고민이 너무 많다. (회의가 끝난 뒤 94년 대회때 도쿄에서 유학하여 민변과 일본 변호사의 연락을 중간에서 담당했던 임종인 변호사의 말을 들으니, 우리 변호사들 중 참석한다고 신청했다가 출발할 날 며칠 전에 일방적으로 안 가겠다고 취소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았고, 신청 마감이 훨씬 지난 출발 5일 전 신청하여 안 된다고 하니 꼭 가고 싶다고 사정사정하여 정말 어렵게 예약해주었더니 출발 하루 전 안 간다고 취소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다는데 누가 이 예약일을 하나?)

4. 내년 3월 교류회 참가를 기대하며

서울로 돌아오며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는 한일법률가교류회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역사 속에서 희생된 선량한 오끼나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끼나와와 일본의 관계는 어떠한가. 오끼나와는 일본의 식민지인가. 유구 왕국은 오랜 역사를 가졌는데, 오끼나와 사람들은 미군정시대에 왜 유구공화국으로 독립주장을 하지 않고 일본 복귀를 주장했는가. 소련도 해체되어 힘을 못 쓰는 마당에 미국은 왜 일본에 4만 명이나(오끼나와에 3만 명)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가. 일본정부는 왜 이를 용인하면서 미군주둔비를 대고 있는 것인가. 우리 나라 미군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우리 나라에 있는 미군의 지위와 특권은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의 지위와 특권과 어떻게 다른가. 오끼나와에 가보

니 타이완 타이뻬이시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밖에 걸리지 않고 비행기도 하루에 4편씩(서울은 일주일에 3편)이나 있던데 일본, 오끼나와, 중국, 타이완의 관계는 어떠한가. 중국, 타이완, 일본이 각각 소유를 주장하는 센카꾸열도가 오끼나와에 가깝게 있는데 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나라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가 등등이다.

많은 동료, 선배 변호사들께서 내년 3월 오끼나와 교류회에 참석하여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한다.

‘재일조선인’의 위기와 기로에 놓인 민족관

서 경식(호세이대학 강사)

번역 김경자(오사카시립대 한국어 강사)

〈글을 실으면서〉

우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사람들만 만나고 오는 것은 일본을 잘 아는 것이 아니다. 재일동포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번 오끼나와 회의에서도 ‘오끼나와의 재일 한국인의 역사’에 대하여 강연을 들었으나, 부족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재일교포의 입장을 좀 더 알기 위해『역사비평』, 1996. 여름호에 실린 서경식 선생님의 글을 실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자리를 빌려 이 글의 전재를 허락해준 서경식 선생님과 역사비평사에 감사드린다.

- 임종인

우리 민족이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반 세기가 지나고,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식민지지배와 세계전쟁으로 특정지어진 20세기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 가혹한 시대에 입은 깊은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21세기를 맞이하려 하고 있다.

첫번째 문제는 물론 민족분단의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만, 민족성원의 세계적인 규모의 이산도 이 시대가 우리에게 강요한 또 하나의 고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러한 무제가 극복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탈식민지화는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박정희 아래 한국의 역대정권은 흔히 “재일동포는 언젠가 일본인으로 동화 흡수될 운명이다”라고 속마음을 말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민(棄民)정책’을 본국동포 중에서 몇 명이나 본질적으로 비판할 수 있을까? 필자는 본국동포에게

서 “당신은 왜 일본인이 되지 않느냐?”라는 “당신과 일본인은 어디가 틀리느냐?” 등의 말을 들은 적조차 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본국동포가 ‘재일동포’에게 품는 이미지는 ‘잘 먹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말도 못하고 민족사의 기본적 지식도 없는, 민족성을 상실한 사람들’이라는 정도의 것이 많았다.

이것은 물론 어느 정도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표면적으로 틀에 박힌 인상만 가지고 재일동포의 현실을 판단한다면, 참된 이해는 자라나지 않는다. 하물며 그러한 막연한 인상으로 재일동포를 민족공동체의 일원에서 제외한다면, 그 자체는 재일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의 제문제를, 민족분단의 극복과 탈식민지화 과정의 완성이라는 우리 민족 전체 과제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협소한 견해는 무엇보다 본국동포 자신의 해방에도 이롭지 않은 것이다.

재일동포가 일본사회에서 경험하고 있는 차별이나 인간소외의 문제는 일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민족 전체 문제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재일동포의 인간적 해방은 우리 민족성원 전체의 인간적 해방이라는 과제의 일부인 것이다. 필자는 이하에서 재일동포의 역사와 현장, 그들이 직면한 제 문제를 서술하면서 문제해결의 방향이 오도되는 일이 없도록 경

종을 울리고자 한다.

'재일조선인' 이란?

이 글에서는 재일동포를 총칭해서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재일조선인'이란 일본에 사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계 동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원래 재일동포를 조총련계와 민단(재일대한민국민단)계로 구별하는 견해는, 그것 자체가 민족분단을 기정사실로 용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일동포의 역사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

1910년의 '병합'에 의해 우리 민족성원 모두는 강제적으로 '일본신민(臣民)'에 편입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반도인'에게 '내지인'(일본인)과 대등한 권리가 주어진 것은 아니다. 8.15 해방 후에도 재일동포의 국적은 애매한 채로 방치되다가,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효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일본국적'을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일반 외국인과 같은 지위에 놓았다. '국적'을 부여할 때도 박탈한 때도, 당사자인 조선인의 의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재일동포는 모두 새로이 외국인으로서 등록하게 되었다. 오늘부터 너는 외국인니까 '국적'을 등록하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 시점에서 조국 땅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할 국가가 있는가? 대부분의 재일동포들이 신청서류의 '국적란'에 어떻게 기입해야 할지 당혹스러워했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대부분의 동포가 '국적란'에 '조선'이라고 기입했다. 남북 어느 쪽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은 조선반도 출신이다. 어느 쪽의 '국가'가 아니라 자신은 조선 '민족'의 일원이라는 의미였다.

그 후, 분단고착화 과정에서 특히 19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재일동포 중 '국적란'을 '한국'으로 고친 사람도 많아, 현재 '한국적'과 '조선적'의 비율은 약 3대 1로 보인다. 1993년 현

재 일본 법무성 외국인 등록자수의 통계로는 '한국적'과 '조선적'을 합해 68만 2,276명이다. 이외에도 '일본국적'에 귀화한 사람도 많다(현재까지 약 15만 내지 20만 명). 그러나 이것이 재일동포가 '조선인', '한국인', '일본인'이란 세 집단으로 분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국적'이라는 국가측의 척도만을 가지고 재일동포의 실정을 파악할 수는 없다. '조선적'을 가진 사람 모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한국적'을 가진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에 애착을 느끼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일본'에 귀화한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차별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것이며, 그것은 반대로 그들이 무엇보다도 차별받는 쪽의 '조선인'임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나는 이를 전부를 묶어서 '재일조선인'이라고 부르겠다. 재일조선인은 현재 약 85만 내지 90만 명 정도라고 한다.

민족분단의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기성 사실에 떠밀리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하나의 총칭으로 계속해서 불러야 한다. 필자 자신은 '한국적'이지만 이러한 입장에서 민족의 총칭은 '조선'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단 장래 전민족적인 합의가 원만하게 형성된다면 '한'이라도 '고려'라도 그밖의 호칭이라도 괜찮다. 다만 '한국인'이란 것은 한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을 가리킬 뿐으로 여러 국가와 지역에 걸쳐 생활하고 있는 우리 민족의 총칭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는 요즈음 '재일한국·조선인'이란 기묘한 호칭이 정착해가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민족분단 상황의 반영인데, 당사자인 재일동포가 이러한 호칭을 아무런 의문도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지구상에 '조선인'과 '한국인'이란 두 개의 다른 민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 기묘한 것은 단지 '재일'이라는 호칭이다. 이것으로는 '일본에 살고 있는'이라는 상

태를 기술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애매함이 우리 민족과 일본 사이에 역사적이며 또한 현재적으로는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의 답답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인지, 이 말도 최근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일조선인은 일제식민지 지배를 받은 '조선인'의 일원이며, '재일 미국인'이나 '재일이란인' 등의 외국인과는 다른 이유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점에 재일조선인 아이덴티티의 근거가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한국'과 '조선'을 대립적인 이미지로 파악하고, 후자가 전자보다 열등한 것처럼 말하는 것을 최근에 빈번히 듣게 되었다. 심하게는 같은 동포이면서 "조선인입니까?"라고 물으면 분연히 "아뇨, 한국인이에요!"라고 부정하는 장면조차 본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일본사회에서의 '북조선'에 대한 적의나 차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무의식적인 바람이 숨어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일본사회에서는 편견이나 차별은 '북조선'이란 '국가'를 향한 것이기보다는 '조선민족' 전체를 향한 뿌리깊은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차별당하는 것에 변함은 없는 것이다.

미에켄의 우에노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자란 이정자 씨는 일본어로 일본의 전통 단시(短詩)인 화가(和歌)를 짓는 시인이다. 최근 그의 화가가 재일조선인 작품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고등학교용 교과서에 실렸다. 그 대표작은 <민족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조·센징이라 놀림받은 여섯 살의 봄이었다>로, 소학교에 입학한 6살 때 동급생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조·센징'인 것을 알고, 자신의 '민족'과 만났다는 내용이다. '조·센징'이란 일본인이 조선인을 멸시해서 부를 때 붙이는 특별한 억양이다.

그는 1947년생이니까 필자와 같은 세대이다. 그의 경험은 많건 적건 필자 세대의 재일동포에게 공통적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의식적

으로 차별당해온 우리들은 그 부당함에 저항하고 자기자신과 민족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서야 말로 감히 '조선인'이라고 칭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필자가 재일동포를 '재일조선인'이라고 총칭하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국적'이란 것은 당사자인 민중의 의지를 무시하고 국가가 자의적으로 강요하거나 박탈하거나 하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지가 아니라 어떠한 사람의 집단에 속해 있는지이다. 식민지지배, 고향상실과 국외이산, 민족분단, 차별과 소외. 근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나라 민중이 공유한 이러한 고난의 경험이야말로 우리를 하나의 '민족'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형성사

나는 왜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일본에서 태어났는가? 인생의 어느 장면에서 그렇게 자신에게 물어본 적이 없는 재일조선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필자는 1951년 일본 교토시에서 태어났다. 그 이유는 1928년에 충청남도 청양군의 농민이었던 할아버지가 몰락해 토지를 잃어버리자, 아직 어렸던 필자의 아버지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왔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철도공사의 육체노동자가 되었다가, 그 후에는 폐품수집 등 일본사회의 가장 밑바닥 노동에 종사했다. 필자의 아버지는 심한 빈곤과 차별 속에서 겨우 소학교만 졸업하자마자 도제노동에 나가 가계를 지탱했다. 외할아버지도 1920년대에 일본으로 건너와 부농의 허드렛일을 했다. 어머니는 소학교에도 가지 못한 채 교토의 전통산업인 직물공장의 여공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 집의 내력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재일조선인에게 공통된 것이다.

재일조선인은 일제시기의 초기부터 많았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1915년 통계로는 재조선 일본인 30만 명에 비해 재일조선인은 3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 재일조선인의 수가 현저하게 증가경향을 보이는 것은 1917년경 이후부터이다. 이 시기 조선농민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1910~1918)에 의해 토지를 수탈당하고, 이어서 '산미증산계획'(1920~1934)에 의해 궁핍하게 되었다. 농민층의 분해가 진전되어 농민들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버렸다. 이상화가 1925년에 지은 시 <가장 비통한 기욕(祈慾)－간도 이민을 보고>에는 북쪽으로 향하는 굶주린 농민들의 비참한 모습이 적혀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굶주린 농민은 남쪽, 즉 일본으로도 흘러들어왔던 것이다. 필자의 할아버지도 그러한 사람 중의 한 명이었다. 오늘날 중국 연변조선 조자치주에는 합경도 출신의 자손이 많고, 재일조선인에는 경상도나 제주도 출신이 많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재일조선인은 1920년대 10년간 약 27만 명이 증가해 1930년에는 약 3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일제는 1931년부터 9.18참변(만주사변)을 시초로 중국침략전쟁을 본격화하는데, 이때 조선은 일제 침략전쟁의 병참기지가 되어 자원이나 '노동력'을 수탈당했다. 그 결과 일본에 유입하는 조선인도 격증, 1931년부터 1938년까지 재일조선인 수는 약 50만 명이 늘어나 1938년에는 총 수가 약 80만 명이 되었다. 이들 재일조선인이 종사한 일은 허드렛일, 토목작업, 폐품회수 등 밀바닥 노동이며, 임금은 일본인의 약 2분의 1이라는 극단적인 차별임금이었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패전에 이르는 시기는, 중국침략전쟁의 장기화와 태평양전쟁의 시작으로 일본인 노동자층이 대량으로 전선에 동원되었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을 보충할 목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이 일본에 강제연행 되었다. 그들은 탄광, 금속광산, 군수

공장, 건설공사현장 등에 보내어져 문자 그대로 '노예'처럼 혹사당했다. 그 결과 8.15해방 때는 23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조선인이 일본에 있었다.

일제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결과 일본, 중국, 소련 극동지방에 유출된 조선인 총수는 해방의 시점으로 약 400만 명에 달했는데, 이는 고국 조선반도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인 인구의 약 6분의 1에 해당한다. 지구 규모로 이산되어 버린 그들의 존재는 그 자체가 우리 민족사의 비극임과 동시에 일제가 저지른 죄업의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8.15 이후의 재일조선인

필자의 아버지는 교토부의 작은 마을에서 8.15해방을 맞았다. 일본인 지주의 소작농으로서 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있던 아버지는 밭 일을 하다가 미군이 뿐만 아니라 빠라를 보고 해방된 것을 알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은 같은 기분이었으리라.

해방 후 바로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자신의 힘으로 고국에 귀환했다. 일본 후생성의 조사로는 그 수가 1946년 3월까지 150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일본에 남은 재일조선인의 80%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결국 약 60만 명이 일본에 남지 않을 수 없었다. 고국의 분단상황이 심각해지고 정치정세가 혐악하게 진행되고 있던 점과 생계전망이 확실치 않은 점 등이 그 이유이다. 예를 들면 필자의 할아버지는 해방 직후 가족을 데리고 귀환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 17년의 세월이 지나버린 그곳에는 자신이 경작할 토지가 없었던 것이다.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 아버지만이 일본에 남은 것은 일본에서 일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간 가족들의 생활을 돋기 위해서였다. 그 후 아버지는

귀환할 기회를 놓쳐버려 필자는 일본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당시 일본정부는 연합국과의 강화가 성립될 때까지 조선인은 모두 '일본국적'을 갖는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일본인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해방국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일본국적 보지자(保持者)로서의 의무에 따르라는 의미였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참정권을 부정했다가, 1947년 5월 발포된 <외국인 등록령>에서 재일조선인을 "당분간 외국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 관리와 억압을 강화했다.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지만, 강화회의에는 한국대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도 초청되지 않았다. 즉 일본 전후처리의 윤곽은 그 최대의 희생자인 우리 민족을 무시하고 결정된 것이다. 조약 발효에 따라 일본정부는 한 조각의 통지로 '조선인 및 대만인'의 '일본국적 상실'을 선언, 재일조선인은 일률적으로 일반 외국인과 같은 처우를 받게 되었다.

물론 재일조선인은 '일본인으로 해달라'고 버티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이 자국에 거주하게 된 특수한 역사적 경위를 일절 묵살하고 일반 외국인과 같이 자기재량으로 체류 허가를 부여하거나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는 재일조선인의 생존권에 대한 억압일 뿐 아니라 일본 자신의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적 책임을 부인한 것이기도 했다. 바꾸어 말하면, 8.15해방 이후에도 식민지 종주국에 남겨진 재일조선인은 민족으로서도 인간으로서도 해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일조약과 재일조선인

1960년 4월 민주혁명을 짓밟고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예비회담을 개시한 후 14년 만인 1965년 6월에 한일조약을 조인했는데, 최대의 문제점은 일본식민지지배의 책임을 애매하게 한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는 1910년 '병합'조약에 이르기까지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한 여러 가지 불평등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적혀 있다. 이 조문의 의미를 한국측은 구조약은 체결 때부터 무효이며 (따라서) 일본의 식민지지배는 불법이라는 의미라고 한국국회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일본측은 구조약은 현재로는 무효가 되었지만 "양자의 완연한 의사, 평등한 입장에서 체결되었다"고 국회에서 수상이 답변했다. 역사적 책임을 부정하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가 현재도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작년의 와타나베 전 외부대신이나 무라야마 (당시) 수상의 망언을 보아도 명확하다.

한일조약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무상공여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를 주게 되었는데, 일본은 이 자금이 배상이나 보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독립축하금'이란 명목의 '경제협력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권은 이 돈과의 교환으로 모든 대일청구권을 방기해버렸던 것이다. 이것을 구실로 일본정부는 그 후부터 지금까지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여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거절하고 있으며 강제노동당한 사람들의 미지불 임금의 청구에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 오늘날 많은 일본인은 정부각료에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식민지지배의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요구에 대해서 그 일은 한일조약으로 다 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태를 만들어낸 주범은 물론 일본정부이지만 반대의 목소리를 탄압하고 한일조약을 체결한 박정권은 물론, 역대의 한국정부도 공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일조약은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일조약의 <법적 지위협정>은

재일조선인 가운데 '한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협정영주권'을 주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추방압력 아래서 끊임없이 생존권을 위협받아온 재일조선인에게 있어서 이것은 일종의 '후미에'(그림을 밟는다는 의미로, 에도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성화를 밟고 지나가게 하여 신자인지 아닌지를 판명한 것인데, 지금은 사상이나 입장을 강권적으로 조사하는 수단을 일컫는 것을 비유하여 쓰임)가 되었다. 일본정부는 본래 '조선적'인가 '한국적'인가의 구별 없이 모든 재일조선인의 거주권을 무조건 보장해야 하는 것이 도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에 따라 '한국적'과 '조선적'을 갖는 사람의 지위에 큰 차별이 생겼다. 간신히 1991년 <입관특례법>에 따라 '한국적'도 '조선적'도 '특별영주'가 허가되었지만, 그때까지 실제로 25년간이나 '조선적' 동포는 '한국적' 동포보다 더 불안정한 지위에 계속 놓여 있었다.

해방 후 불행히도 고국은 분단되었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재일조선인 사이에 지리적인 군사경계선을 긋는 것은 원래 불가능했다. 실제 재일조선인의 가정에는 가족 친척 중에 '조선적' '한국적' '일본적'이 섞여 생활하고 있다. 이것이 아직 분단되지 않은 재일조선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냉전이데올로기에 빌붙어 한일조약을 강행한 박정권은 일본정부와 공모해서 재일조선인 사회를 군사경계선으로 갈라놓으려고 했던 것이다.

1980년대 들어 외국인등록증에 지문날인 강제 폐지를 요구하는 투쟁이 재일조선인 사이에서 확대되었다. 이 제도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의 상징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처음에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을 성원하는 척하다가 결국 이 문제를 일본측으로부터 인권탄압 비판과 되바꾸기 위한 '외교카드'로 이용하고, 전례에 따라 '경제협력금'을 받고 유야무야시켜 버렸다.

1984년에 일본을 방문한 전두환은 한국 '원수'

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지배의 최고책임자인 일본 천황 히로히토와 회견했는데, "금세기의 한 시기에 양국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존재한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애매한 말로 책임을 덮어 숨긴 히로히토에 대해서, 전두환은 "비 온 뒤에 땅 굳는다" 따위로 답변하는 허구의 화해극을 연기해 보였다.

군사력으로 권력을 탈취해 부정하게 축재해온 역대 한국 권리자들은 그 도덕적 결함과 냉전이 데올로기 때문에 대일교섭을 정당하게 벌일 수가 없었다. 그런 그들에게 재일동포의 민족적 존엄이나 인간적 권리를 진정으로 응호하는 역할은 기대할 수도 없었다.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차별상황

오랫동안 재일조선인의 존엄을 훼손해온 외국인등록 지문날인제도는 1992년이 되어 겨우 '영주자'에 한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서명'과 '가족사항'의 등록이 의무화되었고, '외국인등록증'은 전과 같이 상시 휴대할 것이 의무화되어 위반할 경우 처벌된다. 즉 재일조선인을 치안정책의 대상으로 보고 그 동향을 상시 감시하려는 일본정부의 자세에는 기본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공무원 임용문제가 요즈음 화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도도부현(都道府縣: 한국의 道에 해당)이나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 한국의 직할시에 해당)에서는 '일본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자'는 채용시험을 볼 수 없다. 즉 '일본국적'이 없는 재일조선인은 납세 등 주민으로서의 의무는 일반 일본인과 똑같이 부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의사나 기술자 등은 예외이다). 작년 고치켄 지사가 현직원 채용시험에서 '국적조항'을 폐지할 방침을 천명하여 주목을 받았다. 오사카나 기와사키 등 재일조선인이 다수 거주하

고 있는 도시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있었다. 그러나 4월 말 가와사키 시장은 국적조항 폐기방침을 밝혔는데 고치켄과 오사카 시에서는 자민당 등 보수세력과 정부의 반대로 진전이 없다. 이같은 반대에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일본정부는 1953년 이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국가의사의 형성'에 관계하는 공무원이 되려면 '일본국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 '국적조항' 때문에 재일조선인은 공립학교의 정식 교원이 될 수도 없다. 1991년의 한일각서에 따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을 '상근 강사'로만 채용하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상근 강사'로는 학교운영 방침 결정에 관여할 자격이 없다. 학교교육을 '공권력의 행사', '국가의사의 형성'으로 파악하는 일본정부의 국가주의적 교육관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침략전쟁의 기치였던 일장기나 천황제를 찬미하는 노래인 '기미가요'를 학교교육에 강제하고 있으나 교직원조합조차도 최근에는 저항을 방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재일조선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발언권만을 제거하려는 저의가 환하게 들여다보이는 것이다.

일본에는 재일조선인을 위한 민족학교가 있다. 그 출발점은 해방 직후에 결성된 조련(재일조선인연맹)이 일제시기에 빼앗긴 민족말과 민족문화를 스스로의 손으로 찾기 위해 1946년부터 건설에 착수한 조선인 학교이다. 그러나 일본을 점령한 미국군과 일본정부는 재일조선인의 자주권을 부정, 1948년에는 재일조선인의 심한 저항을 탄압하고 조선인 학교를 폐쇄했다. 1953년부터 민족학교가 재건되어 현재 일본에는 총 153개, 민단계 한국학교가 12개 있다. 그러나 일본 문부성의 교과과정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계 2개교를 제외하고, 그밖의 모든 학교는 학교교육법에 의거한 정식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 때문에 민족학교의 졸업자격은 일본학교 입학자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대학수험자격은 일부의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일반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조성금도 주지 않기 때문에 민족학교 학생의 학부모들은 교육비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조건 때문에 현재 학령기의 재일조선인 생도의 85% 내지 90%는 일본학교를 다니고 있다. 거기서는 조선어나 조선문화를 가르치는 커녕 역사의 진실을 덮어 가리는 일본중심 주의적 역사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일본사회의 재일조선인 차별은 이렇게 제도적인 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도에 나타나지 않는 차별이야말로 더욱 심각하다.

필자는 도쿄의 한 사립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매년 재일조선인 학생의 우울한 모습을 보게 된다. 먼저 지방에서 상경한 학생은 집을 빌리는 일부터 고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대다수의 일본인 집주인이나 아파트 경영자는 재일조선인에게 방을 빌려주기를 꺼리기 때문이다. 졸업생의 취직도 어려운 문제이다. 공무원이나 교원에 대해서도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민간기업도 재일조선인을 채용하지 않는 예가 많다.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표면상 금하고 있는데, 이를 알고 있는 기업측은 다른 이유를 붙여서 비난을 피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맛볼 때가 많다. 본래는 그러한 차별에 대해 소송을 일으켜서라도 싸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같이 경험하는 자잘한 차별에 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그래서 이들은 일본명을 쓰고 일본인인 체하며 살아가게 된다.

재일조선인 학생들의 이런 우울함은 사실 25년 전에 필자가 경험한 것과 같다. 일본사회는 이 점에서 견고하게 변하지 않았다. 물론 학생들만이 우울한 것은 아니다. 모든 재일조선인이

이런 모멸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 보다 오히려 일본사회 구석에서 숨죽이고 살고 있는 동포들의 상황이 더 심각함에 틀림없다.

일찍이 일본인의 대부분이 재일조선인에 대해서 '뒤떨어진다, 냄새난다, 더럽다'는 편견을 품고 있었다. 이는 일제시기에 식민지지배를 관철하기 위해 심어진 차별의식에다가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경까지의 재일조선인의 가난한 생활 상에 대한 멸시감이 더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편견은 최근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없어지지는 않았다고 해도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필자가 대학에서 일본인 학생과 접하며 느끼는 것은 '무섭다' '감정적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집념이 강하다' '일본의 과거를 추급하는 것은 사실 돈이 목적이다' 등 새로운 형태의 편견이 자라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최근의 양 민족간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즉 '종군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역사의 진실을 감추고 책임을 애매하게 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해, 한국도 북조선도 다 신랄한 비판을 반복해왔는데, 이 일로 일본사회에서 쌓인 도리에 맞지 않는 초조함이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풍조는 물론 젊은 이들의 독창적인 발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사죄하면 좋은가?"라든가, "일본은 식민지시기에 조선에 좋은 일도 했다" 등 정치가들의 계속되는 망언으로 상징되는 일본사회의 분위기를 정직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지나지 않는다.

재작년 조선학교 여학생이 통학길에 제복으로 입고 다니는 치마저고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찢겨진 사건이 160건 이상 연속해서 일어났는데, 최근 또 같은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올 4월 25일자 『아사히신문』에는 조선학교의 남학생이 도쿄 이케부쿠로(池袋)역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해 턱과 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는 기사가 실려있었다. 이런 폭행을 가할 때 많은 경우

범인은 "조선인 주제에 건방지다"라든가 "조선에 돌아가라"라는 폭언을 퍼붓는 것이 보통이다. 조선학교에는 "일본 우익을 알보지 말라"든가 "조선인 전부 죽여주겠다" 등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런 사건이 범인이 겸거되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차별에 대항해 스스로 민족을 감추지 않고 살려는 재일조선인 어린이들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립무원인 채 던져진 재일조선인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 자신이 왜 일본에 태어났는가하는 역사를 배울 기회도 없이, 조선어와 조선문화와의 접점도 없이, 원래의 이름을 쓰는 일도 없이 자신이 조선인인 것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화적 대학살(genocide)'이라고 불러야 할 이러한 사태는 일제시기의 '민족말살정책'(황민화정책)이 재일조선인에게는 현재도 계속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먼저 자기의 소외를 의식하지 않는 한 결연히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은 알제리 독립투쟁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프란츠 파농의 말이지만, 재일조선인 젊은이들은 일본사회에서 차별과 소외로 고통받으면서 그 원인이나 이유를 인식할 기회조차 빼앗기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보면 최근에 한창인 일본의 '국제화'라든가 '다문화공생 사회'라는 구호가 극히 공허하게 울리고, 오히려 악질스런 기만으로 조차 느껴진다.

'공생(共生)론'과 '시민사회적 재일(在日)론'의 문제점

이 몇 년 일본에서는 '공생'이란 말이 크게 유행이다. 문화적 다원주의를 교과서적으로 해설하면, 어떤 사회 속에서 소수집단의 독자문화나 민족적 아이덴티티(ethnic identity)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대등한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생'이란 말이 일본에서 빈번하게 사

용된 것은 1980년대 이후 일본자본주의의 국제적 전개와 일본기업의 다국적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본사회에 '뉴 커머'(new comer)라고 불리는 다수의 외국인 노동자사 오게 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그들 대부분은 일반 일본인이 좋아하지 않는 육체노동이나 저임금노동에 종사하며 일본자본주의를 밀서 지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사회와 그들 사이에 일어나는 문화간의 충돌이나 마찰에 대처하는 일은 일본자본주의를 위한 요청이기도 했다. 폐쇄적이고 자민족 중심적인 일본사회를 열린 다문화적 사회로 바꾸어가는 것은 차별에 계속 고통 받아온 재일조선인이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며, 그런 의미에서는 '공생' 그 자체를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은 그 이념이 끊임없이 속론으로 왜곡되어, 오히려 일본과 조선, 일본사회와 재일조선인의 관계를 바로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는 미사여구로 작용하고 있는 점이다.

일제는 1943년 소위 '대동아회의'를 열어 아시아 제국이 괴뢰정치인을 불러모아 침략전쟁을 구미열강으로부터 해방투쟁이 것처럼 연출한 적이 있는데, 작년 도쿄에서 대대적으로 열린 '아시아 공생의 제전'은 마치 '대동아회의'의 망령이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과거에는 '대동아 공생', 현재에는 '아시아 공생'이다. 그러나 그런 명백한 침략공정이나 자기찬미의 움직임보다도 일본사회의 '아심적'이라고 생각되는 일각에서 나오는 속류의 '공생론'을 훨씬 경계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예를 들면 1995년 1월 28일자 『아사히신문』의 칼럼 「텐세징고」(天聲人語)는 한신대지진 후 히가시고제(東神戸) 조선초중급 학교에 약 100명의 일본인이 피난, 평상시에는 사귐이 없었는데도 친구같이 도와주며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덮친다. 어떤 격의도 없이 사람들끼리

서로 돋는 얘기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든다." "관동대지진 때 헛소문에 의해 많은 조선인이 살해당한 사건이 생각난다. 격세지감을 느낀다."

'공생'의 미담을 소개할 의도였겠지만 이건 이상하지 않은가? 얘기가 거꾸로 된 것 아닌가?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일본 관민에게 학살당한 조선인은 6천 명 이상에 이르지만, 일본정부는 현재까지 이 학살에 대해 사죄는커녕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조선인은 지금까지 일본인을 집단학살한 적이 없다. '격세지감'이란 어떤 의미인가? 이번에 조선인이 일본인에게 인정을 발휘한 것이 일찍이 일본인의 죄업, 그리고 그것을 70년 이상이나 방치하고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죄업을 씻어주었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기사가 진정한 공생을 추구한다면, 이를 기회로 관동대지진의 조선인학살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죄, 관계자 보상의 필요성을 써야 했다. "어떤 격의도 없이"라지만, 일제시기에도 현재도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를 가로막아온 것은 일본사회의 차별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 덧붙여 말하면, 일본인 주민을 도와준 조선학교에 지금은 부흥보조금은 정식 학교가 인하는 이유로 일반학교보다 적었다. 지진으로 집을 잃은 재일조선인이 집을 빌리려고 해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전대를 당한 사람에게 조차 차별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달콤한 '공생론'은 역사의 진실을 애매하게 하고 현실의 모순을 덮어버린다. 오늘의 일본에서 그런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재일조선인 지식인이 일부까지 이런 '공생론'에 합창하고 있는 현실이다. 예를 들면 원래 조총련계 문필가였던 김찬정씨는 『재일이라는 감동』(1994년)이란 저서에서 관동대지진이 조선인 학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조선인이 '공생'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재일조선인 1세나 2세는 차별체험을 기지고 있는 만큼 일본사회와의 '공생'을 믿을 수가 없지만, 3, 4세의 젊은 세대는 일본에서 자라 사회에 융합하고 있는 '거부반응'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학살은 조선인이 '공생'의 노력을 계울리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인가? 필자는 이런 견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 학살은 당시 일본사회의 상층부부터 서민에까지 침투한 침략주의 이데올로기와 조선인 멸시감이 가져온 것이다.

중국, 미국, 구소련에 살고 있는 조선민족의 현지를 찾아 물어보면서 다녔다는 김찬정 씨는 각 지역의 동포는 분명히 "이주국에서의 정주를 확고한 것으로 하고 재주국 사람들과의 '공생'을 모색하는 방향에 있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생활감각으로부터 떨어진 '관념적인 조국지향'이 재일조선인 사회의 미래상을 불투명한 것으로 하고 '일본사회와의 공생을 방해해온 것'은 아닌 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생을 방해해온 것은 누구인가? 재일조선인(특히 김찬정 씨와 같은 조선적 사람들)의 제권리를 계속 압박해온 것은 일본사회, 일본국가측이 아닌가? 일본은 중국, 구소련, 미국 등과 같은 나라가 아니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조선인이 일본으로 이주한 이유는 거의가 강제적인 것 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배한 구종주국이다. 게다가 그 과거를 극복하기는커녕 정확히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일 조선인 해방이 문제는 다른 문화집단 사이의 '공생'의 문제이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제국주의, 식민지주의의 극복이라는 문제이다.

이런 '공생론'과 공명하는 형태로 최근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견해가 나타나고 있다. 정장연 씨의 정확한 말을 빌리면 이 입장의 특징은 "'민족'에 대신하는 재일사회의 새로운 통합논리로서 '시민'에 착목해, 시민사회의 일원이라는 공통의 입장에서 일본인과

의 '공생'을 호소하는" 것이다.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의 대표적 논자인 문경수 씨는 '재일조선인에 있어서의 '국민국가''라는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950년대 1970년대 초에 이르는 일본의 '고도성장'은 재일조선인 사회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민족'이란 집단의식의 확실한 배양기였던 '조선인 부락'은 해체되고, 재일조선인의 거주환경이나 생활수준이 개선되자 재일조선인의 의식은 '신중산층'화해서 생활을 중시하게 되고, '조국'이나 '민족' 등 '추상적인 대의'는 '신통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사회변화는 재일조선인의 "'민족'에 관계하는 가치의식, 역사감각, 가치관"을 해체, 풍화시켜버렸다. 문경수 씨는 이렇게 재일조선인 구세대의 민족관이나 조국관을 관념적이라고 비판함과 동시에 이런 '당위'로서의 민족관과 무관한 새로운 세대의 '시민(주민)'으로서의 역사감각의 대두를 "국민국가의 틀을 날카롭게 묻는 것"이라고 칭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재일조선인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성세대와 민족단체의 경직화에 대한 비판으로서 귀기울여야 할 점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먼저 첫째로, 이런 견해에 공통되는 점은 '1세적인 민족관이나 조국관'은 젊은 세대의 '실감'과 맞지 않게 되었다는 주장인데, 실제로는 '구세대의 민족관'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재일조선인과 '민족'과의 연결 일반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듯하다. 재일조선인은 차별받고 있다고는 해도 일본사회의 주민임에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들은 본질적인 의미로 '조선민족'의 일원이다. '고도성장' 이후 재일조선인은 그 점을 '실감'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지만, '실감'이라고 말한다면 '지역에서의 주민 참가' 등에 있어서는 전혀 변할 조짐도 없는 일본사회의 배타성

이야말로 필자의 '실감'이다.

재일조선인 젊은이들과 얘기해보면, "민족이라든가 조국이란 말을 들어도 자신에게는 실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실감'에 의거해서 재일조선인 사회의 미래상을 논해도 좋은 것일까? 그들은 '실감'이란 원래 일본국가의 체계적인 민족말살정책(계속되는 황민화정책)이 가져온 것은 아닐까? 그 점을 인식하지 않은 채 자기의 좁은 시야에 들어오는 것만을 '실감'으로서 주장한다. 그러나,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실감'을 초월한 현실이 우리들의 삶을 규정하고 구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 현실에 다가가려고 한다면 '실감'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실감'이야말로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은 일본사회에 대한 비판이 약하다는 점이다. 문경수 씨는 일본의 '고도성장'이 가져온 변화를 강조하는데, 바로 이 기간에 정치의 우익화, 환경파괴, 가족과 교육의 황폐, 그리고 '안락으로의 전체주의'의 침투 등이 진행된 것을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문경수 씨는 196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변화를 '시민혁명'이라고 조차 부르는데, 오늘날 일본사회에 자립적 시민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오히려 시민의 자립성이 착실히 붕괴되어온 것은 아닐까? 시민혁명이란 미국 독립전쟁이나 프랑스혁명에 필적하는 변혁을 의미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은 먼저 현행 헌법의 상징천황제 폐지, 기본적 인권보장에 있어서 국적조항(제11조) 파기가 요구될 것이다. 이런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자립적 시민이 일본 어디에 존재할까. 노마 필드(Norma Field)는 "일본은 전후 인권이 감정으로 자라나지 않은 사회, 그런 자본주의를 키워온 것이 아닐까"라고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감하는 이는 필자뿐만이 아닐 것이다.

장정연 씨는 앞의 논문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의 공생은 구종적 열세에서 있는 전자와 장악한 후자와의 본래적으로 불평등한 공존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고도성장'이 재일조선인의 '신중산층화'를 촉진시켰다는 문경수 씨의 말을, 재일조선인의 경우 "취직 차별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기본적 인권 차원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있는 한, 직장이나 생산현장에서 문제제기는 불가결"하다고 비판한다. 그 동안 일본에서는 '회사인간'의 비극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정장영 씨의 말대로 취직 차별 때문에 기업사회로부터 배척받고 있는 재일조선인의 대부분은 "회사인간의 비애조차도 맛보지 못한 채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시민사회론적 재일론'이나 '공생론'의 시각은 많건 적건 재일조선인의 삶을 규정하는 사회적 모순관계를 일본 국내의 소수민족집단으로서의 그것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재일조선인의 삶은 일본뿐만 아니라 (남과 북을 포함해) '본국'의 정치상황에 따라 규정된다.

한일조약은 일본자본주의의 국제적 전개의 시발점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재일조선인 사회의 분단이 추진되었다. 조선적의 동포는 오랫동안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았으며, 한국적의 동포는 한국 군사정권에 의한 관리와 억압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시대에 적지 않은 재일조선인이 군사정권과 일본지배층의 정치, 경제적 동맹체제 아래에서 행해진 것이다. 이것이 '고도성장'과 같은 기간에 진행된 또 하나의 현실이다. 그 현실은 '실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관계없이 재일조선인의 삶이 조건을 구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전쟁인가 평화인가, 군정인가 민주인가, 종속인가 자주인가, 분단인가 통일인가, 그런 조선반도의 정치적 현실은 국경을 넘어서 재일조선인의 삶의 조건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국에서 어떤 정치가 행해지는가

는 재일조선인에게도 사활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면, 한국정부가 일제 식민지지배의 책임을 염두에 둔 한일조약에 조인한 일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일본사회의 편견을 고치기는커녕, 반대로 편견을 온존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 일이 지금까지 얼마나 재일조선인의 인간적 해방에 방해가 되었는지,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 재일조선인이 '민족'과 '조국'에 관심을 가지고 그 민주적 변혁과 민족통일의 과정에 참가해야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되고 스스로에게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이다. 김찬정 씨나 문경수 씨가 주장하는 것 같은 관념적인 '당위'나 '조국지향'을 위해서가 아니다.

재일조선인과 '민족'

재일조선인은 과연 '조선인'인가? 그런 물음이 여러 곳에서 제기된다.

실제 거의 대부분의 재일조선인은 조선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일반 일본인과 같은 정도의 빈약하고 왜곡된 지식밖에 없다. 그래서 안중근을 아는 사람은 꽤 있을지도 모르지만 김구란 이름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조선어를 한 마디도 할 수 없다. 민족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은 조선어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는 전체의 10%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조선어도 자신의 모어(母語)라고 할 수 없다. 젊은이들이 조선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김치 등의 음식과 치마저고리 등의 민족의상 정도이다.

재일조선인의 80%에서 90%는 본명 외에 통명을 등록하고, 일상생활에서는 통명을 쓰고 있다. 젊은이들의 대부분은 같은 재일조선인보다는 일본인과 결혼한다. 예를 들면 1992년 재일조선인의 혼인 건수가 약 1만 건이었는데, 그 중 일본인과의 혼인이 80% 이상이었다. 그들 사이의 대부분은 일본국적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래도 재일조선인은 '조선인', 즉 조선민족의 일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본국'의 각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이미 조선인(한국인)이라고 할 수 없다, 가까운 장래에 일본인이 되어버리겠지라는 소리가 들려온다. 재일조선인 사회의 일각에서는 자신들은 이미 '민족'이나 '조국'에 어떤 감정도 없다, 자신이 '조선인'이라는 데 집착할 생각이 없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런 난문에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필자는 먼저 다음과 같은 것만은 말해두고 싶다. 앞의 두 가지 소리는 사실 양쪽 다 '민족'에 관한 고정관념에 묶여 있으며 재일조선인이 역사적으로 강요받아온 기성 사실 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및 문화의 공통성 속에서 나타나는 심리상태의 공통성을 기초로 해서 생긴 바의, 역사적으로 구성된 사람들의 견고한 공동체이다. … 이런 특징이 하나라도 빠지면 그것만으로도 민족은 민족이 아니게 된다." 이것은 민족에 대한 스탈린의 정의이다. 필자가 이 정의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1960년대 말 고교생일 때였다. 그때 필자는 극히 상반된 느낌에 사로잡혔다.

먼저 이것은 무조건적으로 올바른 정의라고 필자는 생각했다. 왜냐하면 '조선인'은 여기에 열거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에 의해 '민족'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부정되어왔으며, 그 결과 자신이 본래 속해 있어야 할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에서 태어난 것이다. 이런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조선인'은 누구에게 양보하는 일 없이 당당히 독립을 주장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필자는 그런 자기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규정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문도 솟아났다. 필자는 민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필자

의 모어는 유감스럽지만 일본어이다. 살고 있는 지역도 일본의 영역이며 경제생활도 구석구석까지 일본의 국민경제권에 포섭되어 있다. 문화는 어떤가? 그런 것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필자는 '조선인'의 '민족'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면 할수록, 자기자신은 '민족'의 틀에서 떨어져나가는 모순에 찢겨졌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러한 모순은 의식하건 의식하지 않건, 많은 재일조선인 2세에게 공통이 된다.

이런 모순에 직면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심리적 반응이 나타나는 것 같다. 하나는 열심히 '자격'을 익히려는 방향, 즉 조선어나 조선문화 등 소위 '민족적 소양'을 익혀서 '완전한 조선인'에 한 발자국이라도 가까이 가려는 방향이다. 또 하나는 스스로 무자격을 받아들여 자신은 이미 조선인이 아니며, 이제 조선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민족'으로부터 이탈을 모색하는 방향이다.

이 두 가지 심리적 반응이 재일조선인 사회에서 곧잘 일컬어지는 '재일지향'의 기저에 가로놓인 것 같다. 그러나 이들은 상호 대립하는 듯하지만 사실은 하나의 고정관념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 양자는 모두가 동시에 어떤 고정적인 '민족'을 전제로 하여 '자격'의 유무라는 사고방식에 묶여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20세기라는 시대는 제국주의와 식민지지배가 지구상의 무수한 사람들을 본래 속해 있을 터인 자기 공동체로부터 떼어낸 시대였다. 재일조선인이 경험한 모순은 사실 재일조선인뿐만 아니라 '선진자본주의국'(많은 경우, 일찍이 식민지 종주국)에 사는 '제3세계인'(구식민지인)에게 공통되는 보편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따라서 공동체), 언어, 문화, 이런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후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우리'이다. 그것이 '민족'의 일반적 정의와 일치하는지 아닌지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의 집단은 '민족'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억압당하고 소외당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족'으로 형성되어가는 것이다.

우리 재일조선인은 일제 식민지지배 때문에 일본에 살게 되었고 고국이 해방을 맞이한 후에도 구종주국에 남겨졌다.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문화적 대학살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 그런 우리들은 '조선인'이 아니란 말인가?

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모든 문제는 우리들이 다름 아닌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 모든 아픔이야말로 우리들이 '조선인'이라는 증거라고.

피식민지화라는 비극적인 형태로 근대를 경험한 '우리', 냉전에 의한 분단체제에 끌려 억지로 잘려진 '우리', 그 때문에 조선반도의 남북과 일본을 비롯한 세계각국에 이산해 있는 '우리', 이런 '우리'야말로 그 공통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같은 '조선인'인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경험은 '조선인' 전체 역사적 경험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재일조선인이 스스로 경험한 차별이나 소외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여 거기에 저항하는 속에서 자기를 표명해 나간다면, 그 투쟁은 탈식민지화와 분단상황 극복이라는 과정 속에서 투쟁해온 '본국'이나 다른 지역의 동포들과 서로 연결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가 우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이 '근대'라는 시대를 통째로 극복하려는 공동의 투쟁을 투쟁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순혈주의, 배외주의, 대민족주의 등 민족관의 기성관념이나 고정관념으로부터 자기자신을 해방시키고, 그에 대신하는 우리 자신의 신선한 민족관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을 몇 개의 단편으로 분열시키는 힘에 대항해

갈 수 없는 것이다.

한 재일조선인의 '꿈'

지면이 다 채기 때문에, 필자의 '꿈'을 소개하는 것으로 맷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984년 전두환이 일본에 와서 천황 히로히토와 의견했을 때, 그 모양을 텔레비전으로 본 재일조선인 소년의 투고가 일본 신문에 실렸다. 자신이 조선인임을 학교 친구들에게 숨기고 위축되어 살고 있던 소년은 전두환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투고를 읽고 필자는 복잡한 한숨을 쉬었다.

일본사회는 그 재일조선인 소년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스템 속에서 고립되어 있던 12세 소년이 처음으로 자기 긍정의 계기를 잡은 것이다. 그러나 무리는 아니지만, 소년은 전두환이 어떤 인물인지 몰랐다. 소년은 전두환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들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 구타당하고 투옥되고 죽임당한 사람들에 속해 있다. 그것이 '조선인'인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 소년은 그 후 어떻게 하고 있을까? 당당하게 살고 있을까?

그 소년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무전여행을 하고, 백두산과 지리산을 오르고, 자유롭게 마음 가는대로 선조의 땅을 걸어다닐 수 있는 날, 총이나 탱크가 제거되어 야생 새들의 낙원이 된 군사경계선이었던 곳에서, '본국'에서 자란 사촌 형제들과 함께 야영을 즐기는 날. 길고 길었던 억압과 분단의 시대에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관찰하여 투쟁한 삼촌과 이모의 얘기에 귀를 귀울이는 날... 이것이 그때 필자의 가슴에 떠오른 '꿈'이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났다. 우리들은 조

금이라도 이 '꿈'에 가까이 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꿈'은 누군가가 부여해주거나 실현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그 실현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재일조선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재일조선인은 8.15 이전은 물론 해방 후에도 단 한번도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 된 적이 없었다. 일본에서 참정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서술했는데, '본국' 정치에서의 참정권도 없는 실정이다. 반세기 동안 모든 의견표명과 정치참가의 길이 막힌 채 살고 있는 민족집단도 드물 것이다.

일본에서 참정권을 요구하는 움직임은 재일조선인의 '동화'(필자는 '일본국민화'라고 부른다)를 촉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의견표명과 정치참가에 대한 요구를 품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필자가 이 글에서 강조해온 점은 재일조선인의 운명은 '본국' 동포를 비롯한 '조선인' 전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본국'에 자주 와 독립, 평화와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않으면 재일조선인의 인간적 해방도 바랄 수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재일조선인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본국'에 대한 의견표명과 정치참가의 길을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것은 일본에서의 참정권 획득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법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일본과 '본국' 양쪽의 참정권을 획득해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이 필자의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 '재일국민의 조국 참정권을 회복하기 위한 시민연대 준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뉴스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한겨레21』, 1996년 2월 15일).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을 수 없다. 징병이나 납세 등 '국민의 의무'관계를 어떻게 조정

하는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현상태에서 '본국' 참정권은 '한국국적' 보유를 전제로 하는 재일조선인의 '한국국민화'를 의미하는 점이다.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재일조선인은 '한국적', '조선적' '일본적'으로 구별해서 나눌 수가 없다. 또 나누어서도 안 되는 집단이다. 이 점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본국' 참정권의 시도는 재일조선인사회를 새로 분단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서 또 우리는 민족분단의 현실에 직면하여 그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해방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빼저리게 느끼게 된다. 우리 재일조선인은 또 '분단 모순'(백낙청)에 의해 존재를 규정당한다.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성원 대다수의 희망과 이익에 대응하는 형태로 민족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 주체적이며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참가함으로써만이, 재일조선인은 자기를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가슴에는 또 하나의 '꿈'이 떠오른다.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NC) 같이 세계중에 이산한 '조선인'들의 대표가 한 자리에서 만나는 최고의 결기관이라는 '꿈'은 어떨까? 그 기관은 모든 '조선인'의 존엄과 이해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대의원은 각 지역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다. 의석의 반수는 여성에게 보장한다. 세계의 여러 지역으로부터 여러 '국적'의 여권을 가진 대의원들이 모인다. 조선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영어도 공식 의사 용어로 인정되어 있다. 즉 여기에는 인종이나 혈통은 물론 국적, 언어, 문화에 관계없이 조선민족의 고난의 역사를 공유하고 거기서 스스로의 아이로 새로운 우리나라의 건설에 참가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는 가장 '민족적'인 것이 동시에 '다문화적'이며, 가장 '다문화적'인 것이 '민족적'이라는 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지금은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재일조선인 소년은, 전두환적인 것이 아닌 민족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그의 조부모와 부모에게는 마지막까지 인연이 없었던 투표권을 처음으로 행사하게 되겠지. 그때 비로소 그는 우리 나라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한 재일조선인이 꾸는 '꿈'이다. 그 멀고 먼 '꿈'을 향해 조금씩 조금씩 다가갈 작정이다.

第4回人權と平和のための
韓日 法律家交流會 韓國 參加者 名單

: 女

番號	區分	韓國語	漢字	英語	連絡處
1	辯護士	민경한	閔景翰	Min, Kyung-han	062-226-6455
2	妻	김선영	金仙英	Kim, Sun-young	
3	辯護士	박성호	朴成浩	Park, seong-ho	564-9961
4	妻	한정화	韓姪和	Han, Jeong-hwa	
5	辯護士	천낙봉	千洛鵬	Chun, Nak-bung	588-9274
6	妻	이보희	李寶姬	Lee, Bo-hee	
7	辯護士	손광운	孫光雲	Son, Kwang-un	0351-878-4090
8	妻	오미숙	吳美淑	Oh, Mi-sook	
9	辯護士	이인호	李仁鎬	Lee, In-ho	525-3660
10	妻	동태희	董泰嬉	Dong, Tae-hee	
11	辯護士	김선수	金善洙	Kim, Seon-soo	522-4706
12	妻	정금현	鄭錦賢	Jeong, Keum-hyeon	
13	辯護士	김종률	金鍾律	Kim, Jong-yull	597-6200
14	妻	김지완	金芝婉	Kim, Ji-wan	
15	辯護士	윤종현	尹鍾顯	Yoon, Jong-hyon	522-4706
16	妻	문형숙	文亨淑	Moon, Hyung-sook	
17	辯護士	최봉태	崔鳳泰	Choi, Bong-tae	053)743-0031
18	妻	박정숙	朴貞淑	Park, Jeong-suk	
19	辯護士	천정배	千正培	Chun, Jung-bae	784-3855
20	妻	서의숙	徐義淑	Seo, Eui-sook	
21	辯護士	최병모	崔炳模	Choe, Byoung-moh	064-58-0932
22	妻	박해란	朴海蘭	Park, Hae-ran	
23	辯護士	고영구	高泳耆	Ko, Young-koo	0343-48-3877
24	妻	황국자	黃菊子	Whang, Kook-ja	
25	辯護士	홍성우	洪性宇	Hong, Sung-woo	594-6868
26	妻	정경남	鄭慶男	Chung, Kyung-nam	
27	辯護士	이유정	李淑靜	Lee, You-jeong	3476-1114
28	辯護士	노정희	盧貞姬	No, Jeong-hee	0331-213-2100
29	辯護士	최일숙	崔一淑	Choi, Il-sook	201-2266
30	辯護士	박주현	朴珠賢	Park, Joo-hyun	522-4706
31	辯護士	한택근	韓澤根	Han, Taek-keun	522-4706
32	辯護士	조상희	趙相熙	Jo, Sang-hee	528-5200
33	辯護士	이경우	李慶雨	Lee, Kyung-woo	593-6501

34	辯護士	임종인	林鍾仁	Im, Jong-in	296-8201
35	辯護士	장완익	張完翼	Chang, Wan-ick	525-5437
36	辯護士	전해철	全海澈	Jeon, Hae-cheor	525-5437
37	辯護士	이기욱	李基旭	Lee, Ki-wook	594-2751
38	辯護士	박찬운	朴燦運	Park, Chan-un	581-0650
39	辯護士	장주영	張朱煥	Chang, chu-young	588-9274
40	辯護士	김진국	金晉局	Kim Jin-kook	525-3660
41	辯護士	차흥권	車興權	Cha, Hyung-kwon	756-1221
42	辯護士	김동균	金東均	Kim, Dong-gyun	0331-213-2100
43	辯護士	윤기원	尹琪源	Yoon, Ki-won	3476-1114
44	辯護士	최영도	崔永道	Choi, Young-do	3476-4343
45	辯護士	백승현	白承憲	Baik, Seung-hun	3471-4004
46	實務幹事	최미희	崔美姬	Choi, Mi-hee	522-7284
47	聲優, 탤런트	최병학	崔秉學	Choe, Byoung-hak	782-1131
48	妻	심옥주	沈玉珠	Sim, Ok-joo	
49	前全南大 教授	명로근	明洛 근	Myung, Ro-keun	062-511-0185
50	光州市 議員	안성례	安聖禮	Ahn, Sung-ryae	
51	천낙봉 아이(兒)	천서영 (5세)		Chun, Seo-young	
52	천낙봉 아이(兒)	천재영 (3세)		Chun, Jae-young	

沖縄県参加者名簿弁護士

きし じゅう ちかし 金 城 瞳 Kinjo Chikashi	金城共同法律事務所 沖縄県那覇市松尾1-18-22	☎ 098-861-6861 FAX 098-861-6862
しん さと けい じ 新 里 恵 二 Shinzato Keiji	新里法律事務所書 浦添市宮城4-23-1	☎ 098-879-7427 FAX 098-879-7429
よし ざわ ひろ あき 芳 澤 弘 明 Yoshizawa Hiroaki	芳澤法律事務所 浦添市港川1-34-1	☎ 098-873-1390 FAX 098-873-1393
おお じゅう じゅん いち 大 城 純 市 Oshiro Jun-ichi	大城法律事務所 那覇市字楚辺258-201号	☎ 098-836-2201 FAX 098-836-9988
しま じやく ひで かつ 島 袋 秀 勝 Shimabukuro Hidekatsu	島袋法律事務所 那覇市楚辺1-5-17 プロフェンスビル那覇401号	☎ 098-834-9045 FAX 098-834-9056
にし た じゅ 西 太 郎 Nishi Taro	浦添法律事務所 浦添市字仲間1502-1	☎ 098-875-1901 FAX 098-875-1903
あら がき つとむ 新 垣 勉 Atakaki Tsutomu	コザ法律事務所 沖縄市松本1-1-1	☎ 098-934-3298 FAX 098-934-2975
なか やま ただ かつ 仲 山 忠 克 Nakayama Tadakatsu	沖縄合同法律事務所 那覇市泉崎2丁目2番地5	☎ 098-853-3281 FAX 098-853-8356
か とう ゆたか 加 藤 裕 Kato Yutaka	同 上	同 上
まへ はる せいじ 前 原 正 治 Maehara Seiji	前原正治法律事務所 那覇市泉崎2丁目1番4号 大建ハーバービューマンション501号	☎ 098-831-8086 FAX 共用
ほ なが かん しょう 本 永 寛 昭 Motonaga Kansyou	本永法律事務所 那覇市泊1丁目29番地16	☎ 098-862-7151 FAX 098-862-0338
かみ き あつし 神 木 篤 Kamiki Atsushi	金城共同法律事務所 那覇市松尾1-18-22	☎ 098-861-6861 FAX 098-861-6862

沖縄参加者名簿司法書士

なか たす ひろし 仲 村 弘 Nakamura Hiroshi	仲村・比嘉司法書士事務所 那覇市楚辺1-5-17	☎ 098-834-1100 FAX 098-834-8433
そめ や ひろ よし 染矢 弘芳 Someya Hiroyoshi	染矢弘芳司法書士事務所 那覇市字壱川124番地1 田崎ビル2階	☎ 098-836-3799 FAX 098-836-4670
また じゅ せい いち 又 吉 清 一 Matayoshi Seiichi	又吉清一司法書士事務所 浦添市字仲間1482番地	☎ 098-878-0667 FAX 098-876-5312
こ いづみ まさる 小 泉 勝 Koizumi Masaru	小泉勝司法書士事務所 那覇市久茂地3丁目1番4号 日生ビル4階	☎ 098-867-7880 FAX 098-863-8500
まえ とう せい しん 前 堂 正 進 Maedo Seishin	前堂正進司法書士事務所 具志川市みどり町3-13-20	☎ 098-973-1522 FAX 098-973-5036
や ぎ せん ゆ 屋 宜 宣 勇 Yagi Sen-yu	屋宜宣勇司法書士事務所 那覇市字国場33番地	☎ 098-853-5397 FAX 098-832-5711
はん まつ とう ゆ 半 横 当 友 Hanmine Touyu	半嶺当友司法書士事務所 那覇市樋川1-13-6	☎ 098-854-3075 FAX 098-853-5622

沖縄参加者名簿 學者

高良 鉄美
Takara Tetsumi
新垣 進
Arakaki Susumu
仲地 博
Nakachi Hiroshi
高作 正博
Takasaku Masahiro
高田 晴恵
Takada Kiyoe
土田 武信
Tsuchida Takenobu
山吉 剛
Yamayoshi Tsuyoshi
阿波連 正一
Aharen Syouichi
井端 正幸
Ibata Masayuki
組原 洋
Kumihara Hiroshi

那霸市松川41-13 (琉球大学)
那霸市字真嘉比2番地 (琉球大学)
那霸市首里汀良町1-18-1 (琉球大学)
浦添市字前田1386番地 前田住宅5-405号 (琉球大学)
宜野湾市宜野湾1-12-2 (琉球大学)
那霸市首里石嶺2-228 (沖縄大学)
那霸市識名915号 協栄識名マンション202号 (沖縄大学)
浦添市字経塚560番地 A-601 (沖縄国際大学)
宜野湾市宜野湾2-6-1 沖縄国際大学法学部 (沖縄国際大学)
那霸市松尾1-11-3 比嘉亀吉方 (沖縄大学)

phone 琉球大学 098-895-2221
沖縄大学 098-832-1768
沖縄国際大学 098-892-1111

大会名称: 日韓法律家交流集会(沖縄大会) <<参加者名簿>>
大会開始日: 99/03/25

SEQ	申込者氏名	申込者所轄名表示 所属弁護士表示	分科会	講演
1	庄司 捷彦 Shoji Katsuhiko	庄司法律事務所 〒986-0832石垣市石垣2-4-1-2		
2	小瀬 真 Koseki Makoto	仙台中央法律事務所 〒980-0803仙台市青葉区宮町		
3	小野寺 義象 Onodera Yoshikatsu	一番町法律事務所 〒980-0811仙台市青葉区一番		
4	林 和男 Hirao Kazuo	船橋法律事務所 〒		
5	金 竜介 Kim Ryusuke	台東駿河法律事務所 〒110-0015台東区東上野3-21		
6	高木 國雄 Takagi Kunio	高木國雄法律事務所 〒151-0066東京都渋谷区西原3		
7	高木 梢子 Kawachi Kensaku	高木梢子法律事務所 〒151-0066東京都渋谷区西原3		
8	河内 誠策 Kawauchi Kensaku	横北法律事務所 〒171-0021横浜市西区北幸1-30		
9	喜屋 邦雄 Kizaki Kunio	喜屋邦雄法律事務所 〒160-0022東京都新宿区新宿1		
10	宮里 寛子 Miyazato Kunio	東京共勤法律事務所 〒160-0022東京都新宿区新宿1		
11	清水 さつき Sueyoshi Takako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2	清水 竹人 Kuroda Takeo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3	加藤 奈美 Kuroda Ikuo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4	加藤 竜一 Kuroda Kazuyuki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5	加藤 瑞穂 Kuroda Kazuyuki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6	加藤 修 Kuroda Ikuo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東京都千代田区神田		
17	末吉 宣子 Kuroda Ikuo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		
18	末吉 康子 Kuroda Kazuyuki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		
19	桑原 審朗 Kuroda Kazuyuki	虎ノ門総合法律事務所 〒105-0001港区虎ノ門1-12-		
20	梓澤 和幸 Azusawa Kazuyuki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千代田区神田須田		
21	梓澤 南 Azusawa Kazuyuki	東京千代田法律事務所 〒101-0041千代田区神田須田		

大会名称: 日韓法律家交流集会(沖縄大会) <<参加者名簿>>

大会開始日: 99/03/25

SEQ	申込者氏名	申込者所属名表示 所属先住所 表示	分科会	備考
23	故 藤本 正	藤本正法律事務所 〒102-0073千代田区九段北1-		
25	修 翁山 尚人	翁山尚人 〒		
24	修 大山 勇一	大山勇一 〒		
25	修 河村 健夫	河村健夫 〒		
23	修 中田 實	中田實 〒		
27	修 赤石 あゆ子	赤石あゆ子 〒		
26	修 上野 格	上野格 〒		
28	修 幸葉 恵子	幸葉恵子 〒		
30	修 沢田 稔	沢田稔 〒		
31	修 木村 真実	木村真実 〒		
32	修 赤石 竹夫	赤石竹夫 〒		
33	修 飯田 美琴子	飯田美琴子 〒		
34	修 中島 ゆかり	中島ゆかり 〒		
35	修 鈴木 敦士	鈴木敦士 〒		
36	修 石川 敏	石川敏 〒		
37	修 佐々木 寂一	佐々木寂一 〒		
38	并 及川 信夫	及川法律事務所 〒107-0052港区赤坂2-2-21	Oikawa Nobuo	
39	并 床井 茂	床井法律事務所 〒104-0091東京都中央区銀座	Tokoi Shigeru	
40	并 松浦 基之	南新宿法律事務所 〒160-0022新宿区新宿1丁目9	Matsuura Motoyuki	
41	并 藤原 真由美	東京吉司法律事務所 〒107-0052港区赤坂2-2-21	Fujiwara Mayumi	
42	并 段 勇基	東京十代田法律事務所 〒101-0041千代田区神田須田	In Yuki	

大会名称: 日韓法律家交流集会(沖縄大会) <<参加者名簿>>

大会開始日: 99/03/25

SEQ	申込者氏名	申込者所属名表示 所属先住所 表示	分科会	備考
43	并 西村 正治	西村正治 種町綜合法律事務所 〒102-0041千代田区二番町11 欠席		
44	并 松浦 道平	八王子吉司法律事務所 〒192-0061八王子市横山町2-	Matsuura Shimpei	
45	并 小池 達一郎	五反田法律事務所 〒141-0022品川区東五反田1-	Koike Shin-ichiro	
46	小池 達子	五反田法律事務所 〒141-0022品川区東五反田1-		
47	并 伊藤 和夫	伊藤和夫法律事務所 〒	Ito Kazuo	
48	岡本 敬一郎	地表サンシャイン法律事務所 〒墨田区東池袋1-20-2ホワイ 欠席		
49	并 坂井 真	青葉松治法律事務所 〒134-0065江戸川区南墨西1-	Sakai Makoto	
50	金子 修	新潟台同法律事務所 〒981-0121新潟市古山前1-31 并	Kaneko Osamu	
51	至子 麻子	新潟吉田法律事務所 〒981-0121新潟市古山前1-31		
52	京都府 学者	立命館大学 〒		
53	学 斎藤	立命館大学 〒	Sai Takakazu	
54	并 加島 宏	加島・田中法律事務所 〒570-0971大阪府大阪市鶴見本町6	kashima Hiroshi	
55	并 佐井 幸和	石田・佐井法律事務所 〒530-0047大阪市北区西天満4		
56	鈴 由貴	石田・佐井法律事務所 〒530-0047大阪市北区西天満4		
57	岩城 譲	あべの総合法律事務所 〒593-8302大阪府堺市北条町2	Iwaki Yutaka	
58	岩城 栄	あべの総合法律事務所 〒593-8302大阪府堺市北条町2		
59	兵庫県 幸保	優法律事務所 〒650-0015神戸市中央区多聞	Ito kaho	
60	伊東 容子	優法律事務所 〒650-0015神戸市中央区多聞		
61	伊東 優里	優法律事務所 〒650-0015神戸市中央区多聞		
62	家 正治	神戸市外国语大学 〒651-1111神戸市北区鈴蘭台	Ie Masaji	
63	岡山県 学者	岡山大学法学部 〒700-0082岡山市津島中三丁	Nakatomi Koichi	

大会名称: 日韓法律家交流集会(沖縄大会) <<参加者名簿>>

大会開始日: 99/03/25

SEQ	姓 名	申込者氏名	申込者所属表示 所属先住所 表示				分科会	備 考
34	高知県 者	中 哲生	高知短期大学 〒781-0222高知市蒲戸東町3-	Naka Tetsuo				
35	福岡県 者	角鶴 立身	角鶴法律事務所 〒825-0011福岡県田川市栄町2	Kakudo Tatemi				
36	兵	豊野城 安俊	角鶴法律事務所 〒825-0011福岡県田川市栄町2	Towashiro Yasutoshi				